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석

홍의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석

홍 의 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요약문

S U M M A R Y

-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주요 물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중요 물자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및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분석과 정책적 대응은 미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전략적 방향으로 국제적인 가치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심화를 도모하고, 일본의 경제적·기술적 자율성 확보와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기술을 특정하여 보전·육성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근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정하였음
- 경제안전보장을 법적으로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로 정의하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시책으로서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목표에 관하여 규정함
 -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 하에서, 일본의 경제성장 및 경제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물자(프로그램 포함), 역무, 기술, 그 밖의 이익을 확보
 - 국민의 생존에 필요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자 및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프로그램과 그 밖의 물질들로서 외부에 의존해야하는 핵심 물자의 경우,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서 일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첨단기술이 외부에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나 첨단기술의 외부 의존으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의 성과 활용

- 특허와 관련된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특허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출 방지

□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은 마련된 시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며, 특히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관련 법률로서는 2022년 2월 제정되어 2022년 8월 시행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하여 경제안보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하위 법령 마련 중에 있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대상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전략기술의 수출·송인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0여명)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지정, 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R&D·인력 등 지원, 전략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경제안보장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석

목차

C O N T E N T S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석

I. 경제안전보장법의 추진배경	07
1. 기술유출방지와 사회적 공급망 확보	07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방안 추진	08
3. 경제안전보장법의 경과	09
II. 경제안전보장법의 주요내용	11
1.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한 제도	12
2. 근간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확보에 관한 제도	15
3.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18
4.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21
5. 벌칙 규정	24
III. 평가와 시사점	27

부록

I.

경제안전보장법의 추진배경

1. 기술유출 방지와 사회적 공급망 확보

-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상황의 복잡화, 기술의 발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요물자의 타국 의존에 따른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공급 리스크의 표면화
 -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공급망 취약성이 나타나고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
 - 지정학적 국제정세의 긴장 증가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발생
 - 인공지능(AI), 양자분야 등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육성

- 일본의 공안조사청¹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데이터 및 제품 등에 대한 다른 나라의 중요기술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사안에 주목함. 특히, 다른 나라와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사건들을 예시²로 들며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하는 기술·데이터·제품 등을 대상으로 중요기술 등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문제점 지적

1 일본의 공안조사청(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함

2 일본의 정보기관이 경제안전보장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관련한 사건이 2013년 5건에서 2020년에는 22건으로 급증하는 등 중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해가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2018년 중국정보기관원에 의한 미국의 항공우주관련 기업의 비밀정보 절취사건, 일본 정밀부품제조사의 독자적 기술 설계도 유출사건, 2019년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기업의 정보누설 사건, 일본 전자부품제조사의 기술정보 유출사건, 2020년 일본 통신사의 부정한 서버접속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사건, 일본 화학메이커의 기술정보 유출사건 등 세계 각국과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망의 취약성이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중요물자의 타국 의존에 따른 물자공급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됨
- 세계 각국에서는 전략물자 확보, 산업 기반 강화지원, 첨단기술 연구 개발, 기술 유출 방지 및 수출 관리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국익을 위해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경제안전보장³을 주장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방안 추진

-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국가안전보장국(NSS)’⁴에 ‘경제반’을 설치하여,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종합적인 조정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추진
-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⁵에서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전략적 방향으로 국제적인 가치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심화를 도모하고, 일본의 경제적·기술적 자율성 확보와 우위를 선점하고자 함.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기술을 특정하여 보전·육성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근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화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
-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담당대신을 설치함과 동시에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함
-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안전보장상의 주요과제 중에서, 특히 법제상의 대책을 강구하고 법제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경제안전보장 법제준비실을 설치하고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견지에서 검토진행 하였음

3 경제안전보장의 개념은 2020년 경제중시외교를 표방하는 총리실 주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하면서 사용하게 됨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인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약 90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

5 2019년 6월 18일 각의 결정

3. 경제안전보장법의 추진 경과

-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내 '경제반' 신설
- 2020년 10월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 신설
- 2021년 11월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법제 준비실' 개설
- 2022년 2월 정부 법안 국회 제출
- 2022년 3월 중의원 본회의 심의
- 2022년 4월 중의원 본회의 가결
- 2022년 5월 참의원 내각위원회 가결
- 2022년 5월 11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

II. 경제안전보장법의 주요내용

-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제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제정세의 복잡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
 -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여 안전보장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 수립
 -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제2장),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제3장),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제4장),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제5장) 신설
 -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 경제안전보장을 법적으로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로 정의하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시책으로서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목표에 관하여 규정
-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 하에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물자(프로그램 포함), 역무, 기술, 그 밖의 이익을 확보
 - 국민의 생존에 필요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자 및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프로그램과 그 밖의 물질들로서 외부에 의존해야하는 핵심 물자의 경우,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서 일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첨단기술이 외부에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나 첨단기술의 외부 의존으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의 성과 활용

- 특허와 관련된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특허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출 방지

□ 이러한 경제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은 마련된 시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며, 특히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1.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한 제도 (법 제2장)

가) 배경 및 취지

□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주요 물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대 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⁶한 보고서 『강인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구축, 미 제조업의 재활성화, 폭넓은 성장의 촉진』⁷에서 그리고 EU는 『2020 산업정책 업데이트』⁸에서 중요한 물자의 서플라이 체인 (supply-chain)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

□ 일본은 국제 정세 속에서 국외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국민의 안전이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은 중요물자의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 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6 Executive Order 14017 "America's Supply Chain", The White House, 2012. 2. 24.

7 공급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난 4대 품목에 대해 100일간의 조사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방, 헬스·바이오, ICT, 에너지, 운송, 농식품 등 미국의 6대 주력산업에 대해 1년간의 공급망 조사를 실시함. 100일간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① 반도체, ② 대용량 전지, ③ 중요한 광물·소재, ④ 의약품·유효성분 등 4개 분야에 대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국내의 의약품 유효성분 제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기반 개발을 위해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② 전지와 관련된 희귀재료의 사용을 축소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개발이나 리사이클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지원, ③ 중요광물, 물자의 정부의 비축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8 6가지 전략 분야(① 원재료, ② 전지, ③ 의약품 유효성분, ④ 수소, ⑤ 반도체, ⑥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를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부터 자립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특히 전지, 원자재, 수소 각 분야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반도체와 산업데이터 에지 클라우드의 2분야에서도 새로운 얼라이언스의 발족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기술혁신이 어려운 분야는 EU의 국가지원 완화를 통해 회원국의 공동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 공동이익에 적합한 중요 프로젝트(IPCEI)'의 적극적 적용과 재건기금 등 EU 예산 활용에 있어서 전략상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등 산업지원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였음.

- 국민의 생존, 국민생활·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 민간사업자의 계획 인정 및 지원, 특별 대책으로서의 정부 대응 등
-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정부는 안정공급을 확보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고, 소관대신은 민간사업자가 수립한 공급확보를 위한 계획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 조치

나) 법률의 주요 내용

□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한 기본지침 수립의 내용

-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의 기본적인 방향과 국가의 시책
-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한 기준
-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의 기본 방향
-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역할 등

□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시행령 지정)

- 특정 중요물자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 또는 널리 국민생활·경제활동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물자로서, 해당 물자 또는 그 원재료 등을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공급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

□ 안정공급확보 조치 방침의 수립

- 소관대신이 특정 중요물자 또는 그 원재료 등의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방침을 수립
-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과 시책
-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의 내용 및 실시 기간 또는 실시 기한 등

□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급확보계획의 수립과 지원조치

- 민간사업자는 특정 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조치(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개발, 대체물자개발 등)에 관한 계획(공급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소관대신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급확보계획의 기재사항
 -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특정중요물자의 품목
 - 목표, 내용, 실시기간 등
 - 자금의 금액 및 조달 방법
 - 공급물자에 관한 정보 관리 체계
-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 등에 의한 조성 등의 지원
 - 인정(認定) 공급 확보 사업자의 대응에 대한 조성
 - 인정(認定) 공급 확보 사업자에게 용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이자 지원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로서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가 행해지는 경우, 에너지 환경적합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실시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의 특정 사업 촉진 원활화 업무로 간주하여 동법 에 따른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규정을 적용
-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로서 중소기업자가 인정(認定) 공급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 3억엔을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⁹의 사업으로 보고, 주식을 인수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로서는 동 법상의 보통보험, 무담보 보험, 특별소액 보험의 보험관계로 공급확보 관련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억엔에서 4억엔이었던 것을 3억엔에서 6억엔까지 상향

9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자본금의 액이 3억엔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계된 주식의 보유
2. 자본금의 액이 3억 엔 이하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붙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 및 이것에 준하는 사채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계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붙여진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또는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

□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와 정부의 대처 등

-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는 안정공급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직접 중요물자를 지정·비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소관대신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특정 중요물자의 비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특정 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시장환경의 정비

- 특정중요물자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가 공급확보계획을 신청한 경우, 주무대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특정중요물자 중에서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세 정률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부당 염매(관세 정률법 제8조 제1항)¹⁰ 화물의 수입이 일본의 산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사를 실시

2. 근간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확보에 관한 제도 (법 제3장)

가) 배경 및 취지

-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이 국가 간의 다툼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관여가 의심되는 것을 포함해 근간 인프라 사업¹¹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사건이 다수 발생¹²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근간 인프라 사업자를 포함한 민간기업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이버 공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외국 정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있음

10 화물을 수출국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화물과 동종 화물의 통상 상거래에서의 가격, 그 밖에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1 근간 인프라 사업으로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항공, 전기통신, 방송, 금융, 신용카드 등 경제안전보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특정사회기반사업 대상 분야 참조)

12 변전소의 사이버 공격으로 장기간 정전발생, 송유관 사업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조업 중지사건 등

- 일본의 외부에 있는 주체로부터 근간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거나 설비 도입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 부정 기능을 포함시켜 설비 등의 중요 정보를 파악하는 등 근간 인프라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의 인프라 사업을 규율하는 기존의 사업법 등에는 역무의 안정적 제공 의무 또는 설비의 기술 기준 적합 의무 규정은 있지만,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방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¹³ 설비의 도입이나 유지관리의 위탁 등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기인하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
- 근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¹⁴에서 근간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을 포함하고 동시에 인프라 기능의 보안·유지 등에 관한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시스템의 이용이나 업무제공·위탁 등을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 결정
- 근간 인프라의 중요 설비가 일본의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 설비의 도입·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사전심사, 권고·명령 등 조치가 필요함
 - 근간 인프라 역무(전기·가스·수도 등)의 안정적인 제공확보는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
 - 근간 인프라의 중요 설비는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근간 인프라의 중요 설비가 일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사전에 심사

나) 법률의 주요 내용

- 근간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의 내용
 - 대상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해당 지정에 관하여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포함)

13 일본은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조류 속에서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외환법을 제외하고는 기존 경제 분야의 많은 법률에 안전보장 관점이 포함되지 않았음

14 2021년 6월 18일 각의결정

- 배려해야 할 사항(중요설비 등을 정하는 주무성령의 입안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
- 대상사업자 및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

□ 특정사회기반사업자 지정 (심사대상)

- 대상분야(법률로 대상사업의 외연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한정)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 대상사업자 : 주무대신이 지정
 - 중요설비(구체적인 중요설비는 주무성령으로 지정)의 기능이 정지·저하되었을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 국가·국민의 안전(국민의 생존·사회경제질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심사 : 중요설비가 일본 외부에서 실시되는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지 여부

-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계획서의 사전신고

〈계획서 기재사항 예시〉

- 중요설비 도입의 경우, 중요 설비의 개요, 내용·시기, 공급자, 중요 설비의 부품 등
- 중요설비 유지관리 등의 위탁의 경우, 중요설비의 개요, 내용·기간, 위탁의 상대방, 재위탁 등
- 사전 심사 기간 : 원칙적으로 신고 수리부터 30일간
 - 심사의 필요가 없을 때는 단축 가능
 - 심사나 권고·명령에 필요한 때는 연장 가능(신고 수리로부터 최장 4년간)

□ 권고·명령 :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심사의 결과, 중요 설비가 일본의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중요 설비의 도입·유지 관리 등의 내용의 변경·중지 등 권고

- 권고 후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통지 의무화
- 권고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 수락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에는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령

□ 주무대신의 책무 :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방해 행위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3.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법 제4장)

가) 배경 및 취지

- 산업 기반의 디지털화·고도화에 따라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진전되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은 국가 간의 패권 싸움의 핵심이 되고 있음¹⁵
-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대규모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활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음¹⁶
- 또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만 맡겨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 우위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력력을 통한 고위험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¹⁷

15 2021년 3월 26일 각의결정에 따른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16 미국에서는 과학아카데미·미국과학진흥협회·RAND 연구소 등 여러 싱크탱크가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조사·분석·연구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공헌·기여하고 있음

17 독일에서는 2019년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공동출자법인으로서 이노베이션 기구(Die Bundesagentur für Sprunginnovationen, SPRING-INNOVATIONEN)를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2021년 고위험 연구개발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고등연구개발국(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 ARIA)을 설치하여 고위험 연구에 특허, 독립성, 프로그램 매니저의 강력한 권한, 재무·운영에 있어서 자유를 부여하고 2022년부터 4년간 8억파운드(약 1조2천억원) 지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Climate, ARPA-C) 등의 신설을 표명하였음

- 인공지능(AI)나 양자분야 등의 연구개발은 아카데미나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Bottom-up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¹⁸ 또한 미국에서는 국가가 주도해 온 우주 분야 등의 기술에 대해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직원 파견, 정보제공, 시설 공여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거나¹⁹ 연구도시를 조성함
- 일본 내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해 관계 부처 등이 동반 지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시스템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²⁰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에 대해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담당하는 SIP 등에서 일정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다양한 주체에 대해 원활한 정보를 공유할 때의 보전조치 등의 법적 시스템 부재
- 2021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²¹에서는 '일본 경제안전보장 강화 추진을 위한 첨단 중요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플라이 체인상의 중요기술·물자생산·공급능력 등 전략적인 산업 기반을 일본 내에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중장기적인 자금지원 등을 확보하는 제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검토해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2021년 11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 긴급 제언'²²을 거쳐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²³과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위하여 추경예산에서 2021년 보정예산의 2,500억 엔을 책정함

18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 등에서는 방위산업 이외의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성숙도가 중·고단계인 인건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에서도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안전보장부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19 미국에서는 NASA를 비롯한 일부 정부기관에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권한(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이 부여되고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스타트업 기업·대학을 포함한 컨소시엄의 형성 등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 2021년 11월 내각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사무국 '차기 SIP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대하여'

21 2021년 6월 18일 각의결정

22 2021년 11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 "긴급 제언~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그 기동을 위하여"에서 전략 기술·물자의 특징, 기술의 육성, 기술 유출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의 추진 등 금년 중에 싱크탱크 기능의 활동을 개시해 중요 기술의 특정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인공지능이나 양자분야 등 첨단적인 중요 기술을 신속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안전보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비전을 설정한 다음, 그 실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3 2021년 11월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에서는 일본의 기술적 우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첨단적인 중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실용화를 지원하기로 함. 특히, 경제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틀과 노력이 진전되는 가운데 5,000억 엔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테러·사이버 공격 대책, 안전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향후 이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적인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확고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판단
-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하여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금지원, 민관협력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 위탁(싱크탱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법률의 주요 내용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의 수립 및 국가의 지원
 -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특정중요기술개발 기본지침) 수립과 내용
 -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자금을 의하여 행해지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의회 구성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기금 지정
 - 첨단기술에 관한 국내외의 사회경제정세, 연구개발 동향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금 중에서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목적으로 지정기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금은 내각총리대신은 재무대신과 지정기금소관대신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금의 자금 보조
 - 이 지침에 근거하여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을 실시

특정중요기술	첨단 기술 중에서 외부로부터 연구개발 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해당 기술에 따라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방해 등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구체적으로는 우주·해양·양자·AI 등의 분야에서의 첨단적인 중요기술을 상정)
---------------	--

- 민관 파트너십(협의회)
 - 협의회 설치
 - 국가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그 자금을 교부하는 대신 (연구개발대신)이 기본지침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별로 연구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동의 하에 구성원으로 추가

※ 지정 기금(경제 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반드시 설치

- 협의회 구성원

- 연구개발대신(大臣)·국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연구대표자/종사자·싱크탱크 등

- 협의회 기능

- 연구개발 추진에 유용한 시즈니즈(Seeds needs) 정보공유 및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협력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실시
- 상호 협의 하에서 공유되는 민감한 정보는 협의회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관리와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
-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 정보 등을 상정하고 있음
- 연구성과는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자를 포함한 협의회가 연구개발의 진전이나 기술의 특성, 정부 인프라, 테러·사이버 공격 대책, 안전보장 등에 있어서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촉진대책이나 각각의 기술성과의 취급 등에 관하여 비공개 여부 결정

□ 조사연구용역 위탁(싱크탱크)

- 특정 중요기술의 진단 및 그 연구개발 등에 기여하는 조사연구를 내각총리대신이 일정한 능력을 가진 기관(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

4.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법 제5장)

가) 배경 및 취지

- 일본 정부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²⁴에서 연구개발 성과 중 특허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논문, 학회 발표, 홈페이지 게재 등 다른 매체를 통한 기술 유출에 대한 대처 방안과의 정합성·균형이나 각국의 특허 제도의 기본방향까지 고려하여 이용자의 부담도 배려함과 동시에 특허출원 공개나 특허 공표에 관해 제도의 내용적 측면을 포함한 검토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그 후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1'²⁵ 및 '경제

²⁴ 2020년 7월 17일 각의결정

²⁵ 2021년 6월 18일 각의결정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²⁶에서 특허의 공개 제도에 대해 각국의 특허 제도를 고려하여 이노베이션의 촉진과 양립시키면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비공개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

- 일본의 현행 특허제도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경우 일정기간 후에 일률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밀유지가 필요한 발명이 출원되어도 그 공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국회 등에서 지적되고 있음
- 특허제도를 통하여 공개가 되서는 안 되는 발명으로서 공개되어 일본의 안전보장이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설사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공개하여야만 하는 상황²⁷
- 많은 국가가 특허제도의 예외조치로서 민감한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을 비공개로 하는 동시에, 유출방지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당 발명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G20 국가 중 이러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뿐임
- 특허출원의 비공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개할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출원은 출원공개 등의 절차를 유보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보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특허절차를 통한 민감한 기술의 공개나 정보유출을 방지
- 지금까지 안보상의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포기해야만 했던 발명자에게 특허법상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

나) 법률의 주요 내용

- 특허출원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특정중요기술개발기본지침)
 - 특허법의 출원 공개에 관한 특례 조치로서 특허법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정보의 경우,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

26 2021년 6월 18일 각의결정

27 2015년 일본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기술에 관한 특허공보나 이 특허기술에 기초한 기기가 IAEA의 사찰을 받은 다른 나라의 극비 연구시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민감한 기술의 특허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문제발생

-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 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 협의사항으로는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의 취급,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에 관한 조치 사항
- 지정기금의 지정과 국가의 자금 보조
- 첨단기술에 관한 국내외의 사회경제정세 및 연구개발 동향 조사·연구실시와 조사·연구의 법인 위탁 (특정 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

□ 기술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 (제1차 심사)

- 특허청은 공개할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출원을 내각부에 송부. 단, 특허법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으로는 핵 관련 기술, 선진무기기술 등으로서 보전심사(제2차 심사)에서 정한 것
- 제1차, 제2차 심사 중 및 보전지정 중에는 출원공개 및 특허심사를 유보

□ 보전심사 (제2차 심사)

- 보전심사는 발명의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한 심사로서, 보전심사에서는 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의 정도, ② 발명을 비공개로 할 경우,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보전심사에 관여하는 국가의 기관의 직원 및 관계자는 비밀 누설 금지
- 특허출원인의 보전심사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나 받을 때 까지 발명내용의 공개 금지

□ 보전지정

- ‘보전대상발명’을 지정, 출원인에게 통지
 - 보전지정 기간은 1년 이내, 이후 1년마다 연장 필요 여부 판단
 - 보전지정 효과
 - 출원의 취하 금지
 - 발명 실시 허가제
 - 발명내용 공개 원칙 금지
 - 발명정보의 적정관리 의무
 - 타 사업자와의 발명 공유 승인제
 - 외국 출원 금지

□ 외국출원²⁸제한(제1국 출원의무) 및 외국출원 제한의 사전확인

- 일본 내에서 실시한 2개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에 먼저 출원해야 하는 취지의 제1국 출원의무 규정
- 일본에서 해당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외국출원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가능

□ 손실보상

- 국가는 보전대상발명(보전지정이 해제되거나 보전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포함)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허가에 조건을 붙인 것, 그 밖에 보전지정을 받음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

5. 벌칙 규정

□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및 중요유지관리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권고·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에 붙은 조건에 위반하여 보전대상의 발명을 한 경우
- 거짓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허가 또는 승인 받은 경우
-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 특정중요설비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연구개발협의회의 업무,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의 사무, 특허출원의 보전심사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 외국출원 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28 외국 특허출원 및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 협력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

-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벌칙 적용
 - 특허출원의 허가에 붙은 조건에 위반하여 보전대상의 발명을 한 경우
 - 특허출원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 외국출원 금지를 위반한 경우
 - 특허출원 보전심사에 있어서 정보를 취득한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III. 평가와 시사점

-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주요 물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중요물자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및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분석과 정책적 대응은 미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중요물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중요전략물자 지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근간 인프라 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어서 통신·운송·금융 등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며,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과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등 '경제안전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으로서 볼 수 있으나,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통한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본의 반도체와 배터리 전략은 공급망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 반도체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²⁹ 등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품목이자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품목으로 인공지능(AI)과 함께 반드시 우위를 확보해야하는 핵심 기반으로 인식

29 중국의 경우 WTO 규범을 넘어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기존 반도체 공급망 내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을 확대하는 경향. 특히 중국은 2015-2025년 까지 '국가집성전로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을 통하여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1,45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보조금도 지원

-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대만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투자금액 약 8,000억 엔 중 절반인 4,000억 엔을 일본정부가 보조하였으며³⁰, 장기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개발 프로젝트로서 ① 포스트 5G 정보 시스템 관련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 ②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프로젝트 ③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 개발 등 3가지이며,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파워반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특허출원의 비공개제도 는 일본만 도입하지 않고 있던 비공개 특허·발명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비공개하고 기업이나 발명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논란이³¹ 되었던 비공개 특허출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벌칙규정에 있어서 일본의 ‘국외’에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외국출원 금지, 보전대상발명의 공개, 특허관련 비밀 누설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 마련
- ‘경제안보’는 세계 주요국가의 주요전략으로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EU 등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 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을 핵심허브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첨단기술에서부터 제조업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중국과의 분업관계로 인하여 미·중 갈등의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국과 연관된 대외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물자와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의 공급망 강화, 소부장기업의 역량 축적 등 중장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낮추어 나갈 수 있는 전략 필요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는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경제안보의 이슈와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안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역량을 집결하여 대외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기술 및 공급망에 대한 의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30 EU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제조사에 대하여 ‘배터리혁신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약 29억 유로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31 「秘密特許制度、防衛省の協力不可欠」(2021. 4. 7), SankeiBiz.

-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³²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우리나라 관련 법률로서는 2022년 2월 제정되어 2022년 8월 시행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하여 경제안보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하위 법령 마련 중에 있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대상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전략기술의 수출·승인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0여명)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지정,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R&D·인력 등 지원, 전략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가안보실내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여 경제안보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도 개설하기로 하였음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 COVID-19 팬데믹 지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를 연계한 종합적 리더십과 집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32 2022년 5월 3일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참조

참고문헌

REFERENCES

김규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21.11.26.

손승우, 新경제안보 시대의 성장전략과 해법, 제49회 입법정책포럼, 2022.5.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提言, 2022.2.

PSIA 公安調査廳, 經濟安全保障の確保に向けて, 2021.

白石 重明, 「經濟安全保障」の本質的課題, NPI Research Note, 2022.3.

부록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目次

第一章	総則（第一条－第五条）
第二章	特定重要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
第一節	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等（第六条－第八条）
第二節	供給確保計画（第九条－第十二条）
第三節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の特例（第十三条－第二十五条）
第四節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及び中小企業信用保険法の特例 （第二十六条－第二十八条）
第五節	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市場環境の整備（第二十九条・第三十条）
第六節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よる支援（第三十一条－第四十一条）
第七節	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による支援（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
第八節	特別の対策を講ずる必要がある特定重要物資（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
第九節	雑則（第四十六条－第四十八条）
第三章	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第四十九条－第五十九条）
第四章	特定重要技術の開発支援（第六十条－第六十四条）
第五章	特許出願の非公開（第六十五条－第八十五条）
第六章	雑則（第八十六条－第九十一条）
第七章	罰則（第九十二条－第九十九条）
	附則

第一章 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国際情勢の複雑化、社会経済構造の変化等に伴い、安全保障を確保するためには、経済活動に関して行われる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害する行為を未然に防止する重要性が増大していることに鑑み、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を策定するとともに、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として、特定重要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及び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する制度並びに特定重要技術の開発支援及び特許出願の非公開に関する制度を創設することにより、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を総合的かつ効果的に推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基本方針)

第二条 政府は、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以下「基本方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基本方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 二 特定重要物資（第七条に規定する特定重要物資をいう。第六条において同じ。）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及び特定社会基盤役務（第五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社会基盤役務をいう。第四十九条において同じ。）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並びに特定重要技術（第六十一条に規定する特定重要技術をいう。第六十条において同じ。）の開発支援及び特許出願の非公開（第六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許出願の非公開をいう。）に関する経済施策の一体的な実施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 三 安全保障の確保に関し、総合的かつ効果的に推進すべき経済施策（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し必要な事項
- 3 内閣総理大臣は、基本方針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基本方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二項の規定は、基本方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内閣総理大臣の勧告等)

- 第三条** 内閣総理大臣は、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推進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行政機関の長に対し、必要な資料又は情報の提供、説明、意見の表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2 内閣総理大臣は、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推進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行政機関の長に対し、必要な勧告をし、又はその勧告の結果とられた措置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3 内閣総理大臣は、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推進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行政機関の長に対し、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に資する情報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国の責務)

- 第四条** 国は、基本方針に即して、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を総合的かつ効果的に推進する責務を有する。
- 2 国の関係行政機関は、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の実施に関し、相互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国は、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を総合的かつ効果的に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資金の確保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規制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第五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規制措置は、経済活動に与える影響を考慮し、安全保障を確保するため合理的に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章 特定重要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

第一節 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等

(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

- 第六条** 政府は、基本方針に基づき、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特定重要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以下この章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という。）に関する基本指針（以下この

章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の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
 - 二 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に関し国が実施する施策に関する事項
 - 三 特定重要物資の指定に関する事項
 - 四 第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を作成する際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
 - 五 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に必要な資金の調達円滑化の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第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を作成する際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含む。）
 - 六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第三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いう。第八条第二項第四号及び第九条第六項において同じ。）並びに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第三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をいう。第八条第二項第四号及び第三十三条第二項第五号において同じ。）及び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第四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をいう。第八条第二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に関して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第三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をいう。第八条第二項第四号及び第九条第六項において同じ。）及び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第四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をいう。第八条第二項第四号及び第九条第六項において同じ。）が果たすべき役割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 七 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 八 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に当たって配慮すべき基本的な事項
 -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に関し必要な事項
- 3 内閣総理大臣は、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の案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産業構造その他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に関し知見を有す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5 内閣総理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前三項の規定は、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特定重要物資の指定)

第七条 国民の生存に必要な不可欠な若しくは広く国民生活若しくは経済活動が依拠している重要な物資（プログラムを含む。以下同じ。）又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部品、設備、機器、装置若しくはプログラム（以下この章において「原材料等」という。）について、外部に過度に依存し、又は依存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当該物資若しく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物資等」という。）の生産基盤の整備、供給源の多様化、備蓄、生産技術の導入、開発若しくは改良その他の当該物資等の供給網を強靱化するための取組又は物資等の使用の合理化、代替となる物資の開発その他の当該物資等への依存を低減するための取組により、当該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を図ることが特に必要と認められるときは、政令で、当該物資を特定重要物資として指定するものとする。

(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

第八条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に基づき、前条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特定重要物資のうち、その所管する事業に係るものに関し、特定重要物資ごとに当該特定重要物資又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等（以下この章及び第八十六条第一項第二号において「特定重要物資等」という。）に係る安定供給確保を図るための取組方針（以下この章において

「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対象となる個別の特定重要物資等(以下この項において「個別特定重要物資等」という。)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の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

二 個別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に関し主務大臣が実施する施策に関する事項

三 個別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の内容に関する事項及び当該取組ごとに取組を行うべき期間又は取組を行うべき期限

四 個別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に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及び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又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に関して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又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が果たすべき役割に関する事項

五 対象となる個別の特定重要物資に係る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に関する事項

六 個別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に当たって配慮すべき事項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個別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に関し必要な事項

3 主務大臣は、対象となる個別の特定重要物資について、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たときは、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にお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対象となる個別の特定重要物資に係る同条第六項に規定する措置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4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財務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を定め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二項の規定は、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節 供給確保計画

(供給確保計画の認定)

第九条 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を図ろうとする者は、その実施しようとする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以下この条において「取組」という。)に関する計画(以下この節及び第二十九条において「供給確保計画」という。)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務大臣に提出して、そ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二以上の者が取組を共同して実施しようと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者は、共同して供給確保計画を作成し、前項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3 供給確保計画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安定供給確保を図ろうとする特定重要物資等の品目

二 取組の目標

三 取組の内容及び実施期間

四 取組の実施体制

五 取組に必要な資金の額及びその調達方法

六 取組を円滑かつ確実に実施するために行う措置

七 取組に関する情報を管理するための体制

八 供給確保計画の作成者における当該特定重要物資等の調達及び供給又は使用の現状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4 主務大臣は、第一項の認定の申請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係る供給確保計画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認定をするものとする。

一 取組の内容が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に照らし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二 取組の実施に関し、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で定められた期間以上行われ、又は期限内で行わ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

三 取組の実施体制並びに取組に必要な資金の額及びその調達方法が供給確保計画を円滑かつ確実に実施するため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四 特定重要物資等の需給がひっ迫した場合に行う措置、特定重要物資等の供給能力の維持若しくは強化に資する投資又は依存の低減の実現に資する措置その他の取組を円滑かつ確実に実施するために行う措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が講じら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

五 取組に関する情報を適切に管理するための体制が整備されていること。

六 同一の業種に属する事業を営む二以上の者が共同して作成した供給確保計画に係る第一項の認定の申請があった場合にあっては、次のイ及びロ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イ 内外の市場の状況に照らして、当該申請を行う事業者とその営む事業と同一の業種に属する事業を営む他の事業者との間の適正な競争が確保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

ロ 一般消費者及び関連事業者の利益を不当に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ないこと。

5 主務大臣は、第一項の認定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主務大臣は、第一項の認定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当該認定に係る特定重要物資につ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行う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又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供給確保計画の変更)

第十条 前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認定供給確保事業者」という。）は、当該認定に係る供給確保計画を変更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主務大臣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主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は、前項ただし書の主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について準用する。

(供給確保計画の認定の取消し)

第十一条 主務大臣は、認定供給確保事業者が認定を受けた供給確保計画（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届出があっ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以下この章において「認定供給確保計画」という。）に従って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を行っ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認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認定供給確保計画が第九条第四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いものと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認定供給確保事業者に対して、当該認定供給確保計画の変更を指示し、又はその認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3 第九条第六項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認定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定期의報告)

第十二条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は、毎年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認定供給確保計画の実施状況について主務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節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の特例

(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

第十三条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に基づき、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以下この節及び第九十八条において「公庫」という。）及び第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者（以下この節及び第四十八条第五項において「指定金融機関」という。）の次に掲げる業務の実施に関する基本指針（以下この節において「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公庫が指定金融機関に対し、認定供給確保事業者が認定供給確保事業（認定供給確保計画に従って行われる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に関する事業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行うために必要な資金の貸付けに必要な資金を貸し付ける業務及びこれに附帯する業務（以下この節において「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という。）

二 指定金融機関が認定供給確保事業者に対し、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な資金を貸し付ける業務のうち、当該貸付けに必要な資金について公庫から貸付けを受けて行うもの（以下この章及び第九十六条第二号において「供給確保促進業務」という。）

2 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及び供給確保促進業務の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

二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が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な資金の調達円滑化に関して公庫及び指定金融機関が果たすべき役割に関する事項

三 公庫が行う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の内容及びその実施体制に関する事項

四 指定金融機関が行う供給確保促進業務の内容及びその実施体制に関する事項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及び供給確保促進業務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

3 主務大臣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主務大臣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を定め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公庫の行う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

第十四条 公庫は、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平成十九年法律第五十七号）第一条及び第十一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

第十五条 公庫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に基づき、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の実施方法及び実施条件その他の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の実施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方針（以下この節及び第九十八条第一号において「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庫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を定めるときは、あらかじめ、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 3 公庫は、前項の認可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公庫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に従って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指定金融機関の指定)

第十六条 主務大臣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供給確保促進業務に関し、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と認められる者を、その申請により、供給確保促進業務を行う者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銀行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金融機関であること。

二 供給確保促進業務の実施体制及び次項に規定する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が、法令並びに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及び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に適合し、かつ、供給確保促進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

三 人的構成に照らして、供給確保促進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知識及び経験を有していること。

2 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以下この節において「指定」という。）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等実施基本指針及び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に基づき供給確保促進業務に関する規程（次項及び第十八条において「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これを指定申請書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に添えて、主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には、供給確保促進業務の実施体制及び実施方法に関する事項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指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銀行法（昭和五十六年法律第五十九号）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法律若しく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を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二十三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あっ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イ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又は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い者

ロ 指定金融機関が第二十三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指定の取消しに係る聴聞の期日及び場所の公示の前六十日以内にその指定金融機関の役員であった者で当該指定の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もの

(指定金融機関の指定の公示等)

第十七条 主務大臣は、指定をしたときは、当該指定に係る指定金融機関の商号又は名称、住所及び供給確保促進業務を行う営業所又は事務所の所在地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2 指定金融機関は、その商号若しくは名称、住所又は供給確保促進業務を行う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の所在地を変更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の変更の認可等)

第十八条 指定金融機関は、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を変更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主務大臣は、指定金融機関の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が供給確保促進業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上不適當と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供給確保促進業務規程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協定)

第十九条 公庫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については、指定金融機関と次に掲げる事項をその内容に含む協定を締結し、これに従いその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 一 指定金融機関が行う供給確保促進業務に係る貸付けの条件の基準に関する事項
- 二 指定金融機関は、その財務状況及び供給確保促進業務の実施状況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公庫に提出すること。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指定金融機関が行う供給確保促進業務及び公庫が行う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の内容及び実施方法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公庫は、前項の協定を締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帳簿の記載)

第二十条 指定金融機関は、供給確保促進業務につ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監督命令)

第二十一条 主務大臣は、この節の規定の施行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金融機関に対し、供給確保促進業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供給確保促進業務の休廃止)

第二十二条 指定金融機関は、供給確保促進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2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 3 指定金融機関が供給確保促進業務の全部を廃止したときは、当該指定金融機関に対する指定は、その効力を失う。

(指定金融機関の指定の取消し等)

第二十三条 主務大臣は、指定金融機関が第十六条第四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ものとする。

- 2 主務大臣は、指定金融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一 供給確保促進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 二 指定に関し不正の行為があったとき。
 - 三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
- 3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指定金融機関の指定の取消し等に伴う業務の結了)

第二十四条 指定金融機関について、第二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指定がその効力を失ったとき、又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指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当該指定金融機関であった者又は当該指定金融機関の一般承継人

は、当該指定金融機関が行った供給確保促進業務の契約に基づく取引を結了す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指定金融機関とみなす。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の適用)

第二十五条 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が行われる場合における公庫の財務及び会計並びに主務大臣については、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を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二年法律第三十八号）第六条に規定する特定事業促進円滑化業務とみなして、同法第十七条（同条の表第十一条第一項第五号の項、第五十八条及び第五十九条第一項の項、第七十一条の項、第七十三条第一号の項、第七十三条第三号の項、第七十三条第七号の項及び附則第四十七条第一項の項に係る部分を除く。）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られた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表第六十四条第一項の項中「経済産業大臣」とあるのは、「内閣総理大臣」と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が行われる場合における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同法の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十一条第一項第五号	行う業務	行う業務（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以下「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という。）を除く。）
第五十八条及び第五十九条第一項	この法律	この法律、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第七十一条	第五十九条第一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二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九条第一項
第七十三条第一号	この法律	この法律（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二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
第七十三条第三号	第十一条	第十一条及び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十三条第一項第一号
第七十三条第七号	第五十八条第二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二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八条第二項
附則第四十七条第一項	公庫の業務	公庫の業務（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を除く。）

第四節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及び中小企業信用保険法の特例

(中小企業者の定義)

第二十六条 この節において「中小企業者」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いう。

- 一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三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三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

って、製造業、建設業、運輸業その他の業種（次号から第四号までに規定する業種及び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二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一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って、卸売業（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三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って、サービス業（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四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五十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って、小売業（次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五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政令で定める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金額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その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数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って、その業種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六 企業組合

七 協業組合

八 事業協同組合、協同組合連合会その他の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組合及びその連合会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

九 医業を主たる事業とする法人であって、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三百人以下のもの（前各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の特例)

第二十七条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は、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一号）第五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業のほか、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中小企業者が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資本金の額が三億円を超える株式会社を設立する際に発行する株式の引受け及び当該引受けに係る株式の保有

二 中小企業者のうち資本金の額が三億円を超える株式会社が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とする資金の調達を図るために発行する株式、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等（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第五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付社債等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引受け及び当該引受けに係る株式、新株予約権（その行使により発行され、又は移転された株式を含む。）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等（新株予約権付社債等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行使により発行され、又は移転された株式を含む。）の保有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業は、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の適用については、それぞれ同法第五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業とみなす。

(中小企業信用保険法の特例)

第二十八条 中小企業信用保険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四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普通保険（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普通保険」という。）、同法第三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無担保保険（第五項において「無担保保険」という。）又は同法第三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小口保険（第五項において「特別小口保険」という。）の保険関係であって、供給確保関連保証（同法第三条第一項、第三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債務の保証であって、認定供給確保事業に必要な資金に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中小企業者に係るものについての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同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する。

第三条第一項	保険価額の合計額が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二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供給確保関連保証（以下「供給確保関連保証」という。）に係る保険関係の保険価額の合計額とその他の保険関係の保険価額の合計額とがそれぞれ
第三条の二第一項及び第三条の三第一項	保険価額の合計額が	供給確保関連保証に係る保険関係の保険価額の合計額とその他の保険関係の保険価額の合計額とがそれぞれ
第三条の二第三項及び第三条の三第二項	当該借入金の額のうち	供給確保関連保証及びその他の保証ごとに、それぞれ当該借入金の額のうち
	当該債務者	供給確保関連保証及びその他の保証ごとに、当該債務者

2 中小企業信用保険法第三条の七第一項に規定する海外投資関係保険の保険関係であって、供給確保関連保証を受けた中小企業者に係るものについての同項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中「二億円」とあるのは「三億円（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認定供給確保事業に必要な資金（以下「供給確保事業資金」という。）以外の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係る保険関係については、二億円）」と、「四億円」とあるのは「六億円（供給確保事業資金以外の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係る保険関係については、四億円）」と、同条第二項中「二億円」とあるのは「三億円（供給確保事業資金以外の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係る保険関係については、二億円）」とする。

3 中小企業信用保険法第三条の八第一項に規定する新事業開拓保険の保険関係であって、供給確保関連保証を受けた中小企業者に係るものについての同項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中「二億円」とあるのは「三億円（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認定供給確保事業に必要な資金（以下「供給確保事業資金」という。）以外の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係る保険関係については、二億円）」と、「四億円」とあるのは「六億円（供給確保事業資金以外の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係る保険関係については、四億円）」と、同条第二項中「二億円」とあるのは「三億円（供給確保事業資金以外の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係る保険関係については、二億円）」とする。

4 普通保険の保険関係であって、供給確保関連保証に係るものについての中小企業信用保険法第三条第二項及び第五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百分の七十」とあり、及び同条中「百分の七十（無担保保険、特別小口保険、流動資産担保保険、公害防止保険、エネルギー対策保険、海外投資関係保険、新事業開拓保険、事業再生保険及び特定社債保険にあつては、百分の八十）」とあるのは、「百分の八十」とする。

5 普通保険、無担保保険又は特別小口保険の保険関係であって、供給確保関連保証に係るものについての保険料の額は、中小企業信用保険法第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保険金額に年百分の二以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率を乗じて得た額とする。

第五節 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市場環境の整備

(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公正取引委員会との関係)

第二十九条 主務大臣は、同一の業種に属する事業を営む二以上の者の申請に係る供給確保計画について、第九条第一項の

認定（第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請に係る供給確保計画について、公正取引委員会に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公正取引委員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主務大臣に対し、前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求められた供給確保計画であって主務大臣が第九条第一項の認定をしたもの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ができる。

(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関税率法との関係)

第三十条 主務大臣は、その所管する産業のうち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ものについて、外国において生産又は輸出について直接又は間接に補助金（関税率法（明治四十三年法律第五十四号）第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補助金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交付を受けた貨物の輸入の事実及び当該輸入が本邦の産業（当該補助金の交付を受けた貨物と同種の物資を生産している本邦の産業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実質的な損害を与え、若しくは与えるおそれがあり、又は本邦の産業の確立を実質的に妨げる事実についての十分な証拠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おいて、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第六項に規定する調査に関する事務を所掌する大臣に当該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その所管する産業のうち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ものについて、不当廉売（関税率法第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不当廉売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された貨物の輸入の事実及び当該輸入が本邦の産業（不当廉売された貨物と同種の物資を生産している本邦の産業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実質的な損害を与え、若しくは与えるおそれがあり、又は本邦の産業の確立を実質的に妨げる事実についての十分な証拠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おいて、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調査に関する事務を所掌する大臣に当該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主務大臣は、その所管する産業のうち特定重要物資等に係るものについて、外国における価格の低落その他予想されなかった事情の変化による特定の種類の貨物の輸入の増加（本邦の国内総生産量に対する比率の増加を含む。）の事実及び当該貨物の輸入がこれと同種の物資その他用途が直接競合する物資の生産に関する本邦の産業に重大な損害を与え、又は与えるおそれがある事実についての十分な証拠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おいて、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関税率法第九条第六項に規定する調査に関する事務を所掌する大臣に当該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4 主務大臣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調査の求めをした場合であって、当該調査を開始することが決定したときは、当該求めをした旨及びその求めに係る事実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第六節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よる支援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指定及び業務)

第三十一条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及び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に基づき、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社団法人、一般財団法人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法人であって、第三項に規定する業務（以下この章及び第九十六条第三号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という。）に関し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を、その申請により、特定重要物資ごとに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経理的基礎及び技術的能力を有するものであること。
- 二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実施体制が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に照らし適切であること。

三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以外の業務を行っ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業務を行うことによって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ものであること。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以下この節において「指定」という。）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四十一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その役員のうち、第一号に該当する者がある者

3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一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が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な資金に充てるための助成金を交付すること。

二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が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な資金の貸付けを行う金融機関（第三十三条第二項第四号において「貸付金融機関」という。）に対し、利子補給金を支給すること。

三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対象とする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に関する情報の収集を行うこと。

四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対象とする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に必要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当該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を図ろうとする者の照会及び相談に応ずること。

五 前各号に掲げる業務に附帯する業務を行うこと。

4 主務大臣は、指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が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実施する際に従うべき基準（以下この節において「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5 主務大臣は、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を定めるときは、あらかじめ、財務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主務大臣は、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を定めたときは、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前二項の規定は、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指定の公示等)

第三十二条 主務大臣は、指定をしたときは、当該指定に係る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名称、住所及び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行う営業所又は事務所の所在地並びに指定に係る特定重要物資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2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その名称、住所又は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行う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の所在地を変更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規程)

第三十三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行う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開始前に、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する規程（以下この条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規程で定めるべき事項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指定に係る特定重要物資

二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対象となる認定供給確保事業に関する事項

- 三 第三十一条第三項第一号に掲げる業務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に対する助成金の交付の要件に関する事項
 - ロ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による助成金の交付申請書に記載すべき事項
 - ハ 認定供給確保事業者に対する助成金の交付の決定に際し付すべき条件に関する事項
 - ニ イから八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助成金の交付に関し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 四 第三十一条第三項第二号に掲げる業務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貸付金融機関に対する利子補給金の支給の要件に関する事項
 - ロ 貸付金融機関による利子補給金の支給申請書に記載すべき事項
 - ハ 貸付金融機関に対する利子補給金の支給の決定に際し付すべき条件に関する事項
 - ニ イから八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利子補給金の支給に関し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 五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を設け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の管理に関する事項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 3 主務大臣は、第一項の認可の申請が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及び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に適合するとともに、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認可をするものとする。
- 4 主務大臣は、第一項の認可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財務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規程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規程が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又は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規程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

- 第三十四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主務大臣が供給確保支援実施基準において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が行う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とし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及びこれに附帯する業務に関す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これらの業務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ための基金（以下この節及び第九十九条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という。）を設け、次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補助金をもってこれに充てるものとする。
- 一 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に実施する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に係る業務であつて、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に緊要なもの
 - 二 複数年度にわたる業務であつて、各年度の所要額をあらかじめ見込み難く、弾力的な支出が必要であることその他の特段の事情があり、あらかじめ当該複数年度にわたる財源を確保しておくことがその安定的かつ効率的な実施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
- 2 国は、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対し、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に充てる資金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の運用によって生じた利子その他の収入金は、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に充てるものとする。
- 4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次の方法による場合を除くほか、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の運用に係る業務上の余裕金を運用してはならない。

- 一 国債その他主務大臣の定める有価証券の取得
 - 二 銀行その他主務大臣の定める金融機関への預金
 - 三 信託業務を営む金融機関（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昭和十八年法律第四十三号）第一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金融機関をいう。）への金銭信託で元本補填の契約があるもの
- 5 主務大臣は、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有価証券又は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金融機関を定めるときは、あらかじめ、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 6 主務大臣は、第十条第三項又は第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通知を受けた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第二項の規定により補助金の交付を受けた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限る。）に対し、第二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補助金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金額を国庫に納付すべきことを命ずるものとする。
- 7 前項の規定による納付金の納付の方法及びその帰属する会計その他国庫納付金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 8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を設けたときは、毎事業年度終了後六月以内に、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に係る業務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主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9 主務大臣は、前項に規定する報告書の提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に意見を付けて、国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計画等)

- 第三十五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毎事業年度、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事業計画書及び収支予算書を作成し、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 2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前項の認可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事業計画書及び収支予算書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毎事業年度終了後三月以内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事業報告書及び収支決算書を作成し、主務大臣に提出するとともに、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区分経理)

- 第三十六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業務ごとに経理を区分して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号に掲げる業務に係る経理については、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を設けた場合に限り、区分して整理するものとする。
- 一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次号に掲げる業務を除く。）
 - 二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に係る業務
 - 三 その他の業務

(秘密保持義務)

- 第三十七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役員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は、正当な理由がなく、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てはならない。

(帳簿の記載)

- 第三十八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つ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監督命令)

第三十九条 主務大臣は、この節の規定の施行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対し、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休廃止)

第四十条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務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てはならない。

2 主務大臣が前項の規定により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全部の廃止を許可したときは、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係る指定は、その効力を失う。

3 主務大臣は、第一項の許可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指定の取消し等)

第四十一条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が第三十一条第二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ものとする。

2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一 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 二 指定に関し不正の行為があったとき。
- 三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

3 主務大臣は、前二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が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を行う必要がないと認めるに至っ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主務大臣は、前三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5 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たときは、その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全部を、当該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全部を承継するものとして主務大臣が選定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引き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おける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引継ぎその他の必要な事項は、主務省令で定める。

第七節 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による支援

(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の指定及び業務)

第四十二条 別表に掲げる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をいう。次項及び第八十六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は、次項の規定による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の指定を受けたときは、同法第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個別法（以下この項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個別法」という。）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法第五条の規定により個別法で定め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この法律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当該指定に係る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第三十一条第三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業務並びにこれらに附帯する業務に限る。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に基づき、その所管する独立行政法人のうち、その所管する事業に係る特定重要物資に係るものを、特定重要物資ごとに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三十二条の規定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について準用する。

(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に設置する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

第四十三条 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は、個別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定に係る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及びこれに附帯する業務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ための基金（以下この条及び第九十九条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という。）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一 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に実施する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取組に係る業務であって、特定重要物資等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に緊要なもの

二 複数年度にわたる業務であって、各年度の所要額をあらかじめ見込み難しく、弾力的な支出が必要であることその他の特段の事情があり、あらかじめ当該複数年度にわたる財源を確保しておくことがその安定的かつ効率的な実施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

2 第三十四条第三項、第八項及び第九項の規定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が設ける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について準用する。

3 独立行政法人通則法第四十七条及び第六十七条（第七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が設ける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の運用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四十七条第三号中「金銭信託」とあるのは、「金銭信託で元本補填の契約がある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八節 特別の対策を講ずる必要がある特定重要物資**(特別の対策を講ずる必要がある特定重要物資の指定等)**

第四十四条 主務大臣は、その所管する事業に係る特定重要物資について、第三節から前節までの規定による措置では当該特定重要物資の安定供給確保を図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安定供給確保基本指針及び安定供給確保取組方針に基づき、安定供給確保のための特別の対策を講ずる必要がある特定重要物資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財務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たときは、当該指定に係る特定重要物資を公示するものとする。

4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の事由が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解除するものとする。

5 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解除について準用する。

6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た特定重要物資又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等について、備蓄その他の安定供給確保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7 前項の規定による備蓄と、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平成二十四年法律第三十一号）第十条その他政令で定め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備蓄とは、相互に兼ねることができる。

8 主務大臣は、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た特定重要物資（国民の生存に必要不可欠な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又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等の供給が不足し、又は不足するおそれがあり、その価格が著しく騰貴したこと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場合において、当該事態に対処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条件を定めて第六項の規定に基づき保有する当該特定重要物資又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等を時価よりも低い対価であって、価格が騰貴する前の標準的な価格として政令で定める価格で譲渡し、貸し付け、又は使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9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実施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財務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施設委託管理者)

第四十五条 主務大臣は、前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効果的に実施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務大臣が指定する法人（以下この条及び第四十八条第七項において「施設委託管理者」という。）に、前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措置に必要な施設（その敷地を含む。）の管理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政令には、施設委託管理者の指定の手續、管理の委託の手續その他委託につい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3 施設委託管理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に係る管理の業務（以下この条及び第四十八条第七項において「施設委託管理業務」という。）に関する規程（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施設委託管理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4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認可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財務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施設委託管理業務規程には、施設委託管理業務の実施の方法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てお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6 主務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認可をした施設委託管理業務規程が施設委託管理業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上不適当と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施設委託管理者に対し、これ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7 施設委託管理者は、毎事業年度終了後三月以内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施設委託管理業務に関し事業報告書及び収支決算書を作成し、主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施設委託管理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施設委託管理業務に係る経理とその他の業務に係る経理とを区分して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主務大臣は、この節の規定の施行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施設委託管理者に対し、施設委託管理業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10 主務大臣は、施設委託管理者が前項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その他当該施設委託管理者による管理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施設委託管理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九節 雑則

(資料の提出等の要求)

第四十六条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関係行政機関の長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資料又は情報の提供、説明、意見の表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資金の確保)

第四十七条 国は、認定供給確保事業者が認定供給確保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な資金の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報告徴収及び立入検査)

第四十八条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所管する事業に係る物資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個人又は法人その他の団体に対し、当該物資又は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等の生産、輸入、販売、調達又は保管の状況に関し必要な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第三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所管する事業に係る特定重要

物資等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個人又は法人その他の団体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よる調査の求めに必要な事項に関し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報告又は資料の提出の求めを受けた者は、その求めに応じ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認定供給確保事業者に対し、認定供給確保計画の実施状況その他必要な事項に関し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5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指定金融機関に対し、供給確保促進業務に関し必要な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指定金融機関の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供給確保促進業務に関し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6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に対し、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必要な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の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に関し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7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施設委託管理者に対し、施設委託管理業務に関し必要な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施設委託管理者の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施設委託管理業務に関し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8 前三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第三章 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

(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

第四十九条 政府は、基本方針に基づき、特定妨害行為（第五十二条第二項第二号八に規定する特定妨害行為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の防止によ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する基本指針（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特定妨害行為の防止によ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する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特定妨害行為の具体的内容に関する事項を含む。）

二 特定社会基盤事業者（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社会基盤事業者をいう。次号及び第五号において同じ。）の指定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当該指定に関し経済的社会的観点から留意すべき事項を含む。）

三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する勧告及び命令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四 特定妨害行為の防止によ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当たって配慮すべき事項（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重要設備及び第五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重要維持管理等を定める主務省令の立案に当たって配慮すべき事項を含む。）

五 特定妨害行為の防止によ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し必要な特定社会基盤事業者その他の関係者との連携に関する事項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妨害行為の防止によ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し必要な事項

3 内閣総理大臣は、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の案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安全保障の確保

に関する経済施策、情報通信技術その他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し知見を有する者の意見を聴くとともに、特定社会基盤役務に関する経済活動に与える影響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三項の規定は、特定社会基盤役務基本指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の指定)

第五十条 主務大臣は、特定社会基盤事業（次に掲げる事業のうち、特定社会基盤役務（国民生活及び経済活動の基盤となる役務であって、その安定的な提供に支障が生じた場合に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五十二条において同じ。）の提供を行う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八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行う者のうち、その使用する特定重要設備（特定社会基盤事業の用に供される設備、機器、装置又はプログラムのうち、特定社会基盤役務を安定的に提供するために重要であり、かつ、我が国の外部から行われ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を妨害する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九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機能が停止し、又は低下した場合に、その提供す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に支障が生じ、これ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該当する者を特定社会基盤事業者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電気事業法（昭和三十九年法律第七十号）第二条第一項第十六号に規定する電気事業

二 ガス事業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五十一号）第二条第十一項に規定するガス事業

三 石油の備蓄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年法律第九十六号）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石油精製業及び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石油ガス輸入業

四 水道法（昭和三十二年法律第七十七号）第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水道事業及び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水道用水供給事業

五 鉄道事業法（昭和六十一年法律第九十二号）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第一種鉄道事業

六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平成元年法律第八十三号）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一般貨物自動車運送事業

七 海上運送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八十七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貨物定期航路事業及び同条第六項に規定する不定期航路事業のうち、主として本邦の港と本邦以外の地域の港との間において貨物を運送するもの

八 航空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三十一号）第二条第十九項に規定する国際航空運送事業及び同条第二十項に規定する国内定期航空運送事業

九 空港（空港法（昭和三十一年法律第八十号）第二条に規定する空港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設置及び管理を行う事業並びに空港に係る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十七号）第二条第六項に規定する公共施設等運営事業

十 電気通信事業法（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四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事業

十一 放送事業のうち、放送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三百三十二号）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基幹放送を行うもの

十二 郵便事業

十三 金融に係る事業のうち、次に掲げるもの

イ 銀行法第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を行う事業

ロ 保険業法（平成七年法律第五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険業

ハ 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条第十七項に規定する取引所金融商品市場の開設の業務を行う事業、同条第二十八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債務引受業及び同法第二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第一種金融商品取引業

- ニ 信託業法（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四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信託業
 - ホ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第二条第十項に規定する資金清算業及び同法第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同法第四条各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の発行の業務を行う事業
 - ヘ 預金保険法（昭和四十六年法律第三十四号）第三十四条に規定する業務を行う事業及び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険法（昭和四十八年法律第五十三号）第三十四条に規定する業務を行う事業
 - ト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振替業
 - チ 電子記録債権法（平成十九年法律第百二号）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債権記録業
 - 十四 割賦販売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百五十九号）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包括信用購入あっせんの業務を行う事業
- 2 主務大臣は、特定社会基盤事業者を指定したときは、その旨を当該指定を受けた者に通知するとともに、当該指定を受けた者の名称及び住所、当該指定に係る特定社会基盤事業の種類並びに当該指定をした日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事項に変更があ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 3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その名称又は住所を変更するときは、変更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指定の解除)

第五十一条 主務大臣は、特定社会基盤事業者が前条第一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該当しなく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解除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特定重要設備の導入等)

第五十二条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他の事業者から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う場合（当該特定社会基盤事業者と実質的に同一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者が供給す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う場合（当該特定重要設備に当該政令で定める者以外の者が供給する特定重要設備が組み込まれている場合を除く。）を除く。）又は他の事業者に委託して特定重要設備の維持管理若しくは操作（当該特定重要設備の機能を維持するため又は当該特定重要設備に係る特定社会基盤役務を安定的に提供するために重要であり、かつ、これらを通じて当該特定重要設備が我が国の外部から行われ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を妨害する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章及び第九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重要維持管理等」という。）を行わせる場合に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特定重要設備の導入又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に関する計画書（以下この章において「導入等計画書」という。）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これ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他の事業者から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他の事業者に委託して特定重要設備の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ことが緊急やむを得ない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2 導入等計画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定重要設備の概要

二 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導入の内容及び時期

ロ 特定重要設備の供給者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ハ 特定重要設備の一部を構成する設備、機器、装置又はプログラムであって特定妨害行為（特定重要設備の導入又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に関して我が国の外部から行われる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を妨害する行為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あるもの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三 特定重要設備の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場合にあっては、次に掲げる事項

イ 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の内容及び時期又は期間

ロ 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の相手方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ハ 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の相手方が他の事業者者に再委託して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再委託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重要設備の導入又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導入等計画書の届出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主務大臣が当該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する日までは、当該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はならない。ただし、主務大臣は、当該導入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の規模、性質等に照らし次項の規定による審査が必要ないと認めるとき、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審査をした結果、その期間の満了前に当該特定重要設備が特定妨害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大きいとはいえ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期間を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4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導入等計画書の届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が特定妨害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大きいかどうかを審査するため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勧告若しくは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はならない期間を、当該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起算して四月間に限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5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はならない期間を延長した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る審査をした結果、当該延長した期間の満了前に当該特定重要設備が特定妨害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大きいとはいえな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延長した期間を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6 主務大臣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審査をした結果、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られた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が特定妨害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るおそれが大き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届出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し、当該導入等計画書の内容の変更その他の特定妨害行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た上で当該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べきこと又はこれらを中止す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勧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当該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する日（第四項の規定による延長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延長をした期間の満了する日）までとする。

7 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を受け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当該勧告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十日以内に、主務大臣に対し、当該勧告を応諾するかしないか及び応諾し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理由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前項の規定により勧告を応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当該勧告をされたところに従い、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勧告に係る変更を加えた導入等計画書を主務大臣に届け出た上で、当該導入等計画書に基づき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又は当該勧告に係る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第七項の規定により勧告を応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第三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規定による導入等計画書の届出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第四項の規定による延長が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延長がされた期間の満了する日）を経過しなくても、前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た導入等計画書に基づき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10 第六項の規定による勧告を受け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が、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なかった場合又は当該勧告を応諾しない旨の通知をした場合であって当該勧告を応諾しない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主務大臣は、当該勧告を受け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勧告に係る変更を加えた導入等計画書を主務大臣に届け出た上で、当該導入等計画書に基づき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

等を行わせるべきこと又は当該勧告に係る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を中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変更を加えた導入等計画書に基づき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べきこと又は当該勧告に係る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を中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導入等計画書の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する日（第四項の規定による延長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延長をした期間の満了する日）までとする。

11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当該特定重要設備の導入又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に関する届出書（第五十四条第五項及び第五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緊急導入等届出書」という。）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特定重要設備の導入等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五十三条 前条第一項の規定は、特定社会基盤事業者が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日から六月間は、当該指定に係る特定社会基盤事業の用に供され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及び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に関する限り、適用しない。

2 前条第一項の規定は、第五十条第一項の特定重要設備を定める主務省令の改正により新たに特定重要設備となった設備、機器、装置又はプログラムについては、当該設備、機器、装置又はプログラムが特定重要設備となった日から六月間は、適用しない。

3 前条第一項の規定は、同項の重要維持管理等を定める主務省令の改正により新たに重要維持管理等となった維持管理又は操作については、当該維持管理又は操作が重要維持管理等となった日から六月間は、適用しない。

(導入等計画書の変更等)

第五十四条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た導入等計画書（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変更をし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う前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前若しくは行わせる期間の終了前に第五十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主務省令で定める重要な変更をする場合に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導入等計画書の変更の案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これ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変更をすることが緊急やむを得ない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五十二条第二項から第十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案の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3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る変更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当該変更の内容を記載した導入等計画書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特定社会基盤事業者は、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た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う前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前若しくは行わせる期間の終了前に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変更（第一項の規定による変更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除く。）をしたとき、又は当該導入を行った後に同条第二項第二号八に掲げる事項につき主務省令で定める変更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変更の内容を主務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各項の規定は、第五十二条第十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た緊急導入等届出書（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変更をし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導入を行う前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前若しくは」とあり、及び前項中「導入を行う前若しくは重

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る前若しくは」とあるのは、「重要維持管理等」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特定重要設備の導入等後等の勧告及び命令)

第五十五条 主務大臣は、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導入等計画書の届出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が前三条の規定により当該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った後又は行った後、国際情勢の変化その他の事情の変更により、当該導入等計画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が特定妨害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又は使用されるおそれが大きいと認めるに至ったときは、当該届出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し、当該特定重要設備の検査又は点検の実施、当該特定重要設備の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の相手方の変更その他の特定妨害行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第五十二条第十一項の規定による緊急導入等届出書の届出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が前三条の規定により当該緊急導入等届出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の導入若しくは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った後又は行った後、当該緊急導入等届出書に係る特定重要設備が特定妨害行為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又は使用されるおそれが大きいと認めるに至ったときは、当該届出をした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し、当該特定重要設備の検査又は点検の実施、当該特定重要設備の重要維持管理等の委託の相手方の変更その他の特定妨害行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五十二条第七項、第八項及び第十項（ただし書を除く。）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勧告について準用する。

(勧告及び命令の手續等)

第五十六条 主務大臣は、第五十二条第六項（第五十四条第二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及び第五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勧告又は第五十二条第十項（第五十四条第二項及び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章及び第八十八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命令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五十二条第六項から第十項まで、前条及び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五十二条第四項（第五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十八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延長、第五十二条第五項（第五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短縮、第五十二条第六項並びに前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勧告並びに第五十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の手續その他これら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主務大臣の責務)

第五十七条 主務大臣は、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し、特定妨害行為の防止に資する情報を提供し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報告徴収及び立入検査)

第五十八条 主務大臣は、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行う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特定社会基盤事業を行う者に対し、当該特定社会基盤事業に関し必要な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第五十一条、第五十二条第六項及び第十項並びに第五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特定社会基盤事業者に対し、その行う特定社会基盤事業に関し必要な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特定社会基盤事業者の事務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当該特定社会基盤事業に関し質問させ、若しく

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資料の提出等の要求)

第五十九条 主務大臣は、この章の規定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関係行政機関の長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資料又は情報の提供、説明、意見の表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四章 特定重要技術の開発支援

(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

第六十条 政府は、基本方針に基づき、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に関する基本指針（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に関する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

二 第六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協議会の組織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三 第六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指定基金の指定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四 第六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査研究の実施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五 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に当たって配慮すべき事項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に関し必要な事項

3 内閣総理大臣は、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の案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内外の社会経済情勢及び研究開発の動向その他特定重要技術の開発支援に関し知見を有す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三項の規定は、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国の施策)

第六十一条 国は、特定重要技術（将来の国民生活及び経済活動の維持にとって重要なものとなり得る先端的な技術（第六十四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おいて「先端的技術」という。）のうち、当該技術若しくは当該技術の研究開発に用いられる情報が外部に不当に利用された場合又は当該技術を用いた物資若しくは役務を外部に依存することで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これらを安定的に利用できなくなった場合におい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を図るため、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に基づき、必要な情報の提供、資金の確保、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協議會)

第六十二條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出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年法律第六十三号。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活性化法」という。）第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国の資金により行われる研究開発等（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四項において「研究開発等」という。）に関して当該資金を交付する各大臣（以下この条及び第八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研究開発大臣」という。）は、当該研究開発等により行われる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を図るため、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に基づき、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等に従事する者のうち当該研究開発等を代表する者として相当と認められる者の同意を得て、当該者及び当該研究開発大臣により構成される協議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協議会」という。）を組織することができる。

2 研究開発大臣は、協議会を組織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協議会を組織する研究開発大臣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協議会に、国の関係行政機関の長、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等に従事する者、特定重要技術調査研究機関（第六十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特定重要技術調査研究機関をいう。第六項において同じ。）その他の研究開発大臣が必要と認める者をその同意を得て構成員として加えることができる。

4 協議会は、第一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協議を行うものとする。

- 一 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に有用な情報の収集、整理及び分析に関する事項
- 二 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効果的な促進のための方策に関する事項
- 三 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内容及び成果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
- 四 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に関する情報を適正に管理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関する事項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に必要な事項

5 協議会の構成員は、前項の協議の結果に基づき、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に関する情報の適正な管理その他の必要な取組を行うものとする。

6 協議会は、第四項の協議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構成員又は特定重要技術調査研究機関（当該協議会の構成員であ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に関し必要な資料の提供、説明、意見の表明その他の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構成員及び当該特定重要技術調査研究機関は、その求めに応じ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7 協議会の事務に従事する者又は従事していた者は、正当な理由がなく、当該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てはならない。

8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協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協議会が定める。

(指定基金)

第六十三條 内閣総理大臣は、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に基づき、活性化法第二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基金のうち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を目的とするものを指定基金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指定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財務大臣、当該指定基金に係る資金配分機関（活性化法第二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資金配分機関をいう。）を所管する大臣（第四項及び第八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指定基金所管大臣」という。）その他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国は、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指定基金に充てる資金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4 指定基金所管大臣は、内閣総理大臣と共同して、当該指定基金により行われる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を図るため、当該指定基金により行われる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等に従事する者のうち当該研究開

発等を代表する者として相当と認められる者、当該指定基金所管大臣及び内閣総理大臣により構成される協議会（次項において「指定基金協議会」という。）を組織するものとする。

5 前条第三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指定基金協議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次条第四項」と、同条第三項中「研究開発大臣」とあるのは「指定基金所管大臣及び内閣総理大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調査研究)

第六十四条 内閣総理大臣は、特定重要技術研究開発基本指針に基づき、特定重要技術の研究開発の促進及びその成果の適切な活用を図るために必要な調査及び研究（次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調査研究」という。）を行うものと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調査研究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調査研究を適切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て次に掲げる基準に適合する者（法人に限る。）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先端的技術に関する内外の社会経済情勢及び研究開発の動向の専門的な調査及び研究を行う能力を有すること。
- 二 先端的技術に関する内外の情報を収集し、整理し、及び保管する能力を有すること。
- 三 内外の科学技術に関する調査及び研究を行う機関、科学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を行う機関その他の内外の関係機関と連携する能力を有すること。

四 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の措置を適確に実施するに足りる能力を有すること。

3 関係行政機関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た者（次項において「特定重要技術調査研究機関」という。）からの求めに応じて、当該委託に係る調査研究を行うために必要な情報及び資料の提供を行うことができる。

4 特定重要技術調査研究機関の役員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は、正当な理由がなく、当該委託に係る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てはならない。

第五章 特許出願の非公開

(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

第六十五条 政府は、基本方針に基づき、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二百一十一号）の出願公開の特例に関する措置、同法第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に係る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以下この章において「明細書等」という。）に記載された発明に係る情報の適正管理その他公にすることにより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発明に係る情報の流出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許出願の非公開」という。）に関する基本指針（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特許出願の非公開に関する基本的な方向に関する事項
- 二 次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政令で定める技術の分野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 三 保全指定（第七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保全指定をいう。次条第一項及び第六十七条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手続に関する事項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許出願の非公開に関し必要な事項

3 内閣総理大臣は、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の案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安全保障の確保に

関する経済施策、産業技術その他特許出願の非公開に関し知見を有する者の意見を聴くとともに、産業活動に与える影響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三項の規定は、特許出願非公開基本指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内閣総理大臣への送付)

第六十六条 特許庁長官は、特許出願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明細書等に、公にすることにより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発明が含まれ得る技術の分野として国際特許分類（国際特許分類に関する千九百七十一年三月二十四日のストラスブール協定第一条に規定する国際特許分類をいう。）又はこれに準じて細分化したものに従い政令で定める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技術分野」という。）に属する発明（その発明が特定技術分野のうち保全指定をした場合に産業の発達に及ぼす影響が大きいと認められる技術の分野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属する場合にあっては、政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が記載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特許出願の日から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する日までに、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許出願に係る書類を内閣総理大臣に送付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当該発明がその発明に関する技術の水準若しくは特徴又はその公開の状況に照らし、保全審査（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審査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に付する必要があ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送付しないことができる。

2 特許出願人から、特許出願とともに、その明細書等に記載した発明が公にされることにより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ものであるとして、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全審査に付することを求める旨の申出があっ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過去にその申出をしたことにより保全審査に付され、次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又はその者から特許を受ける権利を承継した者が当該通知に係る発明を明細書等に記載した特許出願を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も、同様とする。

3 特許庁長官は、第一項本文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したときは、その送付をした旨を特許出願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4 第一項に規定する特許出願が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特許出願である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当該特許出願の日」とあるのは、同表の上欄に掲げる区分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日（当該特許出願が同表の上欄に掲げる区分の二以上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該当する区分に係る同表の下欄に定める日のうち最も遅い日）とする。

特許法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語書面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翻訳文が提出された日（同条第四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当該翻訳文が提出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翻訳文が現に提出された日）
特許法第三十八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した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三十八条の三第三項に規定する明細書及び図面並びに先の特許出願に関する書類が提出された日

特許法第三十八条の四第四項ただし書の場合（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における同条第二項の補完をした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三十八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明細書等補完書が提出された日
特許法第四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の日
特許法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の日

5 特許法第百八十四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とみなされる国際出願については、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6 特許庁長官は、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特許出願人に対し、資料の提出及び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7 特許庁長官が第一項本文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する場合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若しくは当該送付がされずに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が経過するまでの間又は内閣総理大臣が第七十一条若しくは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までの間は、特許法第四十九条、第五十一条及び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8 特許庁長官は、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してから第七十条第一項又は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までの間に特許出願の放棄又は取下げがあったときは、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してから第七十一条又は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までの間に特許法第三十四条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承継の届出があ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9 特許庁長官は、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してから第七十条第一項又は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までの間に特許出願を却下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10 特許庁長官は、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送付をする場合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た場合において、特許出願人から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申出があったとき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送付をしない旨の判断をした旨を特許出願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11 第一項の規定は、同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改正により新たに同項本文に規定する発明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発明を明細書等に記載した特許出願であって、その改正の際現に特許庁に係属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内閣総理大臣による保全審査)

第六十七条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本文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に係る書類の送付を受け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許出願に係る明細書等に公にすることにより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発明が記載され、かつ、そのおそれの程度及び保全指定をした場合に産業の発達に及ぼす影響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当該発明に係る情報の保全（当該情報が外部に流出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いう。第七十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することが適当と認めら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審査（以下この章において「保全審査」という。）をするものと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保全審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特許出願人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資料の提出及び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内閣総理大臣は、保全審査をするに当たっては、必要な専門的知識を有する国の機関に対し、保全審査に必要な資料

又は情報の提供、説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十分な資料又は情報が得られないときは、国の機関以外の専門的知識を有する者に対し、必要な資料又は情報の提供、説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専門的知識を有する者に発明の内容が開示されることにより特許出願人の利益が害されないよう、当該専門的知識を有する者の選定について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国の機関以外の専門的知識を有する者に対し必要な資料又は情報の提供、説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補助者の使用の申出がある場合には、その者及びその補助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明細書等に記載されている発明の内容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に対し、あらかじめ、第八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について説明した上、当該開示を受けることについて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6 内閣総理大臣は、保全指定をす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あらかじめ、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協議を受けた関係行政機関の長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項中「前項の規定により十分な資料又は情報が得られないとき」とあるの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協議に応ずるための十分な資料又は情報を保有していないと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8 保全審査に関与する国の機関の職員及び第五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発明の内容の開示を受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なく、当該発明の内容に係る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てはならない。

9 内閣総理大臣は、保全指定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特許出願人に対し、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なり得る発明の内容を通知するとともに、特許出願を維持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記載した書類を提出するよう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通知に係る発明に係る情報管理状況
- 二 特許出願人以外に当該通知に係る発明に係る情報の取扱いを認めた事業者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者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10 特許出願人は、特許出願を維持す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書類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1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書類の記載内容が相当でないとき認めるときは、特許出願人に対し、相当の期間を定めて、その補正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保全審査中の発明公開の禁止)

第六十八条 特許出願人は、前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は、第七十条第一項又は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までの間は、当該前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通知に係る発明の内容を公開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特許出願を放棄し、若しくは取り下げ、又は特許出願が却下され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保全審査の打ち切り)

第六十九条 内閣総理大臣は、特許出願人が第六十七条第十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書類を提出せず、若しくは同条第十一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期間内に同項の規定による補正を行わなかったとき、前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認めるとき、又は不当な目的のみだりに第六十六条第二項前段の規定による申出をしたと認めるときは、保全審査を打ち切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保全審査を打ち切るときは、あらかじめ、特許出願人に対し、その理由を通知

し、相当の期間を指定して、弁明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全審査を打ち切ったときは、その旨を特許庁長官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 4 特許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ときは、特許出願を却下するものとする。

(保全指定)

第七十条 内閣総理大臣は、保全審査の結果、第六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明細書等に公にすることにより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損なう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大きい発明が記載され、かつ、そのおそれの程度及び指定をした場合に産業の発達に及ぼす影響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当該発明に係る情報の保全をすることが適当と認め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発明を保全対象発明として指定し、特許出願人及び特許庁長官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以下この章及び第八十八条において「保全指定」という。）をするときは、当該保全指定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その保全指定の期間を定めるものとする。

3 内閣総理大臣は、保全指定の期間（この項の規定により保全指定の期間を延長した場合には、当該延長後の期間。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が満了する日までに、保全指定を継続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を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継続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保全指定の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六十七条第二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判断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発明」とあり、及び同条第五項中「明細書等に記載されている発明」とあるのは「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同条第八項中「規定により発明」とあるのは「規定により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当該発明」とあるのは「当該保全対象発明」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内閣総理大臣は、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延長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特許出願人（通知後に特許を受ける権利の移転があったときは、その承継人。以下この章において「指定特許出願人」という。）及び特許庁長官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保全指定をしない場合の通知)

第七十一条 内閣総理大臣は、保全審査の結果、保全指定をする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特許出願人及び特許庁長官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特許出願の取下げ等の制限)

第七十二条 指定特許出願人は、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までの間は、特許出願を放棄し、又は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ない。

2 指定特許出願人は、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までの間は、実用新案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三号）第十条第一項及び意匠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許出願を実用新案登録出願又は意匠登録出願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保全対象発明の実施の制限)

第七十三条 指定特許出願人及び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特許出願人から示された者その他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職務上知り得た者であって当該保全対象発明について保全指定がされたことを知るものは、当該保全対象発明の実施（特許法第二条

第三項に規定する実施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九十二条第一項第六号において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指定特許出願人が当該実施について内閣総理大臣の許可を受け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指定特許出願人は、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実施の内容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請に係る実施により同項本文に規定する者以外の者が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知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その他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漏えいの防止の観点から内閣総理大臣が適当と認めるときは、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ものとする。

4 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には、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漏えい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六十七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及び第八項の規定は、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発明」とあり、及び同条第五項中「明細書等に記載されている発明」とあるのは「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同条第八項中「規定により発明」とあるのは「規定により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当該発明」とあるのは「当該保全対象発明」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内閣総理大臣は、指定特許出願人が第一項の規定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許可に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保全対象発明の実施をした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特許出願が却下されること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特許庁長官及び指定特許出願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指定特許出願人が第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十分に講じていなかったことにより、指定特許出願人以外の者が第一項の規定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許可に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保全対象発明の実施を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

7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指定特許出願人に対し、その理由を通知し、相当の期間を指定して、弁明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8 特許庁長官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には、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待って、特許出願を却下するものとする。

(保全対象発明の開示禁止)

第七十四条 指定特許出願人及び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特許出願人から示された者その他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職務上知り得た者であって当該保全対象発明について保全指定がされたことを知るもの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開示してはならない。

2 内閣総理大臣は、指定特許出願人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開示した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特許出願が却下されること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特許庁長官及び指定特許出願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指定特許出願人が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十分に講じていなかったことにより、指定特許出願人以外の者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開示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

3 前条第七項及び第八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について準用する。

(保全対象発明の適正管理措置)

第七十五条 指定特許出願人は、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を取り扱う者を適正に管理することその他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漏えいの防止のために必要かつ適切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措置を講じ、及び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取扱いを認めた事業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発明共有事業者」という。)をして、その措置を講じ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明共有事業者は、指定特許出願人の指示に従い、前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發明共有事業者の変更)

第七十六条 指定特許出願人は、第六十七条第九項第二号に規定する事業者として同項に規定する書類に記載した事業者以外の事業者新たに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取扱いを認め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指定特許出願人は、前項の場合を除き、發明共有事業者に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取扱いを認めることをやめたときその他發明共有事業者について変更が生じ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変更の内容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保全指定の解除等)

第七十七条 内閣総理大臣は、保全指定を繼續する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保全指定を解除するものと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保全指定を解除したとき、又は保全指定の期間が満了したときは、その旨を指定特許出願人及び特許庁長官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第六十七条第二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全指定を解除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發明」とあり、及び同条第五項中「明細書等に記載されている發明」とあるのは「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同条第八項中「規定により發明」とあるのは「規定により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と、「当該發明」とあるのは「当該保全対象発明」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外国出願の禁止)

第七十八条 何人も、日本国内でした發明であって公になっていないものが、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發明であるときは、次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公にすることにより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旨の回答を受けた場合を除き、当該發明を記載した外国出願（外国における特許出願及び千九百七十年六月十九日にワシントンで作成された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をいい、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章及び第九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我が国において明細書等に当該發明を記載した特許出願をした場合であって、当該特許出願の日から十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とき（第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とき及び当該期間を経過する前に当該特許出願が却下され、又は当該特許出願を放棄し、若しくは取り下げたときを除く。）、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内に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発せられなかったとき（当該期間を経過する前に当該特許出願が却下され、又は当該特許出願を放棄し、若しくは取り下げたときを除く。）及び同条第十項、第七十一条又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ときにおける当該特許出願に係る明細書等に記載された發明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指定特許出願人に対す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發明」とあるのは、「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發明（第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特許出願に係る明細書等に記載された發明にあつては、保全対象発明）」とする。

3 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許出願が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特許出願である場合における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ただし書中「当該特許出願の日」とあるのは、同表の上欄に掲げる区分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日（当該特許出願が同表の上欄に掲げる区分の二以上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該当する区分に係る同表の下欄に定める日のうち最も遅い日）とする。

特許法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語書面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三十六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翻訳文が提出された日（同条第四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当該翻訳文が提出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翻訳文が現に提出された日）
特許法第三十八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した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三十八条の三第三項に規定する明細書及び図面並びに先の特許出願に関する書類が提出された日
特許法第三十八条の四第四項ただし書の場合（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における同条第二項の補完をした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三十八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明細書等補完書が提出された日
特許法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	当該特許出願に係る特許法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の日

4 特許庁長官は、特許法第八十四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とみなされる国際出願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特許出願に係る明細書等に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発明が記載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5 内閣総理大臣は、特許庁長官が第六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特許出願人（通知後に特許を受ける権利の移転があったときは、その承継人を含む。）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外国出願をしたと認める場合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に係る国際出願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するもので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当該特許出願が却下されること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特許庁長官及び特許出願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6 第七十三条第七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について準用する。

7 特許庁長官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ときは、特許出願を却下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特許出願が保全指定が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待って、特許出願を却下するものとする。

(外国出願の禁止に関する事前確認)

第七十九条 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発明に該当し得る発明を記載した外国出願をしようとする者は、我が国において明細書等に当該発明を記載した特許出願をしていない場合に限り、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許庁長官に対し、その外国出願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ものかどうかについて、確認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特許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求めに係る発明が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発明に該当しない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当該求めをした者に回答するものとする。

3 特許庁長官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求め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求めに係る発明が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発明に該当するときは、遅滞なく、内閣総理大臣に対し、公にすることにより外部から行われる行為によって国家及び国民の安全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ないことが明らかかどうかにつき確認を求め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確認を求められた内閣総理大臣は、遅滞なく、特許庁長官に回答するものとする。

4 特許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回答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第一項の規定による求めをした者に対し、当該求めに係る発明が第六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発明に該当する旨及び当該回答の内容を回答するものとする。

5 第一項の規定により確認を求めようとする者は、手数料として、一件につき二万五千円を超えない範囲内で政令で定

める額を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項の規定による手数料の納付は、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収入印紙をも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現金をもって納めることができる。

7 前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の有無については、産業競争力強化法（平成二十五年法律第九十八号）第七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損失の補償)

第八十条 国は、保全対象発明（保全指定が解除され、又は保全指定の期間が満了したものを含む。）について、第七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られなかったこと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その許可に条件を付されたことその他保全指定を受けたことにより損失を受けた者に対して、通常生ずべき損失を補償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補償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総理大臣にこれ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ときは、補償すべき金額を決定し、これを当該請求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六十七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五項前段の規定（保全指定の期間内にある場合は、これらの規定のほか、同項後段及び第八項の規定）は、内閣総理大臣が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発明」とあり、及び同条第五項中「明細書等に記載されている発明」とあるのは「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保全指定が解除され、又は保全指定の期間が満了したものを含む。）」と、同条第八項中「規定により発明」とあるのは「規定により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全対象発明（保全指定が解除され、又は保全指定の期間が満了したものを含む。）」と、「当該発明」とあるのは「当該保全対象発明」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第三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不服がある者は、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六月以内に訴えをもって補償すべき金額の増額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項の訴えにおいては、国を被告とする。

(後願者の通常実施権)

第八十一条 指定特許出願人であって、保全指定がされた他の特許出願について出願公開がされた日前に、第六十六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当該出願公開がされなかったため、自己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が特許法第二十九条の二の規定により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知らないで、日本国内において当該発明の実施である事業をしているもの又はその事業の準備をしているものは、その実施又は準備をしている発明及び事業の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査定又は審決が確定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特許出願に係る特許権又はその際現に存する専用実施権について通常実施権を有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他の特許出願に係る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有する者は、同項の規定により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から相当の対価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特許法等の特例)

第八十二条 特許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について、特許庁長官が第六十九条第四項、第七十三条第八項（第七十四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七十八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その優先権の主張の基礎とした特許出願を却下した場合には、当該優先権の主張は、その効力を失うものとする。

2 保全指定がされた特許出願を基礎とする特許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優先権の主張を伴う特許出願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同法第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時」とあるの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時又は当該先の出願について、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時のうちいずれか遅い時」とする。

3 保全指定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特許法第四十八条の三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その日から三年以内」とあるのは、「そ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た日又は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月を経過した日のうちいずれか遅い日までに」とする。

4 保全指定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特許法第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次の各号に掲げる期間」とあるのは、「次の各号に掲げる期間及び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法律第43号）第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同法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までの期間」とする。

5 特許庁長官は、実用新案法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出願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実用新案登録出願に係る明細書、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保全対象発明が記載されているときは、同法第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保全指定が解除され、又は保全指定の期間が満了するまで、同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権の設定の登録をしてはならない。

(勧告及び改善命令)

第八十三条 内閣総理大臣は、指定特許出願人又は発明共有事業者が第七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保全対象発明に係る情報の漏えいを防ぐ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者に対し、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とるべき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を受け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その勧告に係る措置をとらなかったときは、当該者に対し、その勧告に係る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内閣総理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指定特許出願人又は発明共有事業者が第七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保全対象発明の漏えいのおそれが切迫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者に対し、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報告徴収及び立入検査)

第八十四条 内閣総理大臣は、この章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指定特許出願人及び発明共有事業者に対し、保全対象発明の取扱いに関し、必要な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当該者の事務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保全対象発明の取扱いに関し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送達)

第八十五条 この章に規定する手続に関し、送達をすべき書類は、内閣府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2 特許法第九十条から第九十二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送達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六章 雜則

(主務大臣等)

第八十六条 第二章における主務大臣は、特定重要物資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おける主務大臣は、当該各号に定める大臣とする。

- 一 第二章第三節及び第四十八条第五項の規定 内閣総理大臣及び財務大臣
 - 二 第三十条及び第四十八条第二項の規定 特定重要物資等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
 - 三 第二章第六節（第三十四条第六項を除く。）及び第四十八条第六項の規定 内閣総理大臣及び特定重要物資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
 - 四 第二章第七節の規定 別表に掲げる独立行政法人を所管する大臣（特定重要物資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に限る。）
 - 五 第四十六条及び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 物資の生産、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
- 2 第三章における主務大臣は、特定社会基盤事業を所管する大臣とする。
- 3 第二章及び第三章における主務省令は、前二項に定める主務大臣の発する命令とする。

(権限の委任)

第八十七条 この法律に規定する主務大臣、研究開発大臣及び指定基金所管大臣の権限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一部を地方支分部局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部局又は機関の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権限（金融庁の所掌に係るものに限り、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金融庁長官に委任する。

3 金融庁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の一部を財務局長又は財務支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行政手続法の適用除外)

第八十八条 第五十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延長、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保全指定、第七十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延長、第七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及び第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承認については、行政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二章及び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経過措置)

第八十九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国際約束の誠実な履行)

第九十条 この法律の施行に当たっては、我が国が締結した条約その他の国際約束の誠実な履行を妨げることがないよう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命令への委任)

第九十一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事項は、命令で定める。

第七章 罰則

第九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五十二条第一項又は第五十四条第一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て、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たとき。

二 第五十二条第三項（第五十四条第二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第五十二条第三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同条第四項（第五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延長され、又は第五十二条第三項ただし書若しくは同条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第五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短縮された場合には、当該延長され、又は短縮された期間）中に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たとき。

三 第五十二条第八項（第五十四条第二項及び第五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特定重要設備の導入を行い、又は重要維持管理等を行わせたとき。

四 第五十二条第十項（第五十四条第二項及び第五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八十三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五 第五十二条第十一項又は第五十四条第三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六 第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許可に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保全対象発明の実施をしたとき。

七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七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又は第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承認を受けたとき。

八 第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保全対象発明の内容を開示したとき。

2 前項第六号及び第八号の罪の未遂は、罰する。

3 第一項第六号及び第八号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これらの号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第九十三条 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又は資料の提出の求めに係る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正当な理由がなく漏らし、又は盗用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九十四条 第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外国出願をしたとき（第九十二条第一項第八号に該当するときは除く。）

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 前項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項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第九十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三十七条、第六十二条第七項（第六十三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六十四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た者

二 第六十七条第八項（第七十条第四項、第七十三条第五項、第七十七条第三項及び第八十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た者（第九十二条第一項第六号又は第八号に該当する違反行為をした者を除く。）

2 前項第二号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号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第九十六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 第二十条又は第三十八条の規定に違反して帳簿を備えず、帳簿に記載せず、若しくは帳簿に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ったとき。
- 二 第二十二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供給確保促進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休止し、若しくは廃止し、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 三 第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安定供給確保支援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たとき。
- 四 第四十八条第四項又は第五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たとき。
- 五 第四十八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第五十八条第二項又は第八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又は当該職員の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若しくは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とき。
- 六 第五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名称若しくは住所を変更し、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 七 第五十四条第四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第九十七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て、第九十二条第一項各号、第九十四条第一項又は前条各号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第九十八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公庫の取締役又は執行役は、百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 一 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認可を受けないで供給確保促進円滑化業務実施方針を定め、又は変更したとき。
- 二 第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認可を受けないで同条第一項の協定を締結し、又は変更したとき。

第九十九条 第三十四条第四項又は第四十三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独立行政法人通則法第四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て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基金又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基金を運用したとき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安定供給確保支援法人又は安定供給確保支援独立行政法人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理由

国際情勢の複雑化、社会経済構造の変化等に伴い、安全保障を確保するためには、経済活動に関して行われる国家及び国民の安全を害する行為を未然に防止する重要性が増大していることに鑑み、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を総合的かつ効果的に推進するため、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を策定するとともに、安全保障の確保に関する経済施策として、特定重要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及び特定社会基盤役務の安定的な提供の確保に関する制度並びに特定重要技術の開発支援及び特許出願の非公開に関する制度を創設する必要がある。これが、この法律案を提出する理由である。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제1절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 등(제6조-제8조)

제2절 공급확보계획(제9조-제12조)

제3절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의 특례(제13조-제25조)

제4절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제26조-제28조)

제5절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련된 시장 환경의 정비(제29조-제30조)

제6절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의한 지원(제31조-제41조)

제7절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제42조-제43조)

제8절 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제44조-제45조)

제9절 잡칙(제46조-제48조)

제3장 특정 사회 기반 임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제49조-제59조)

제4장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제60조-제614조)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제65조-제85조)

제6장 잡칙(제86조-제91조)

제7장 벌칙(제92조-제99조)

부칙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국제정세의 복잡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경제활동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함과 동시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및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및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방침)

제2조 ① 정부는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특정중요물자(제7조에 규정하는 특정중요물자를 말한다. 제6조에서도 같다.)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및 특정 사회 기반 임무(제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사회기반역무를 말한다. 제49조에 있어서 같다.)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 및 특정중요기술(제611조에 규정하는 특정중요기술을 말한다. 제60조에 있어서 같다.)의 개발 지원 및 특허출원의 비공개(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의 비공개를 말한다)에 관한 경제시책의 일체적인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경제시책(전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전 3호에 열거하는 것 외,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③ 내각총리대신은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전 2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내각총리대신의 권고 등)

- 제3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설명, 의견의 표명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그 권고의 결과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내각총리대신은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

- 제4조** ① 국가는 기본방침에 따라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 ② 국가의 관계 행정기관은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의 실시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확보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제 조치의 실시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 제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제조치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하여야 한다.

제2장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제1절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 등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

- 제6조** ① 정부는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이하 이 장에서 “안정공급 확보”라고 한다)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이 장에 있어서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
3. 특정중요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방침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5.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의 원활화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9조 제6항에 있어서 같다) 및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33조 제2항 제5호에 있어서 같다) 및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에 있어서 같다)에 관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9조 제6항에 있어서 같다) 및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9조 제6항에서 같다)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9.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③ 내각총리대신은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할 때는 사전에 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 산업 구조 그 외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해 지견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 3항의 규정은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특정중요물자 지정)

제7조 국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널리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의거하고 있는 중요한 물자(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치 혹은 프로그램(이하 이 장에 있어서 "원재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또는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자 혹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이하 이 조에 있어서 "물자 등"이라 한다)의 생산 기반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비축, 생산 기술의 도입, 개발 혹은 개량 그 외의 물자 등의 공급망을 강인화하기 위한 대책 또는 물자 등의 사용의 합리화, 대체가 되는 물자의 개발 그 외의 해당 물자 등에의 의존을 저감하기 위한 대처에 의하여 해당 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시행령)으로 해당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서 지정한다.

(안정공급 확보 대처 방침)

제8조 ① 주무대신은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중요물자 중 그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에 관하여 특정중요물자마다 당해 특정중요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이하 이 장 및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있어서 "특정중요물자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처 방침(이하 이 장에 있어서 "안정공급확보 대책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안정공급 확보 대책 방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상이 되는 개별의 특정중요물자 등(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이라고 한다)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에 관해 주무대신이 실시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및 해당 대처마다 대처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간 또는 대처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한
4. 개별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및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 또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에 관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또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이 하여야 할 역할에 관한 사항
5. 대상이 되는 개별 특정중요물자에 관한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사항
7.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개별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주무대신은 대상이 되는 개별 특정중요물자에 대하여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는 안정공급 확보 대책 방침에 있어서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 대상과 되는 개별 특정중요물자에 관련된 동조 제6항에 규정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주무대신은 안정공급확보 대책 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 재무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주무대신은 안정공급확보 대책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 2항의 규정은 안정공급 확보 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공급확보계획

(공급확보계획의 인정)

- 제9조** ①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는 그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이하 이 조에 있어서 “대처”라고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이 절 및 제29조에 있어서 “공급확보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2 이상의 자는 공동으로 공급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전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공급확보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려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품목
 2. 대처의 목표
 3. 대처의 내용 및 실시 기간
 4. 대처의 실시 체제
 5. 대처에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6. 대처를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
 7. 대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
 8. 공급확보계획의 작성자에 있어서의 해당 특정중요물자 등의 조달 및 공급 또는 사용의 현상
 9.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신청에 관한 공급확보계획이 다음 각호의 모두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정한다.

1. 대책의 내용이 안정공급 확보 대책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2. 이행의 실시에 관하여 안정공급확보 대책 방침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 행해지거나 기한 내에서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 것.
3. 이행의 실시 체제 및 대처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이 공급확보계획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4. 특정중요물자 등의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 하는 조치, 특정중요물자 등의 공급 능력의 유지 혹은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 또는 의존 저감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조치, 그 외의 대처를 원활하고 확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인 것
5. 대처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
6.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급확보계획에 관한 제1항의 인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및 나에 적합한 것
 - 가. 국내외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해당 신청을 실시하는 사업자와 그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의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는 것인 것
 - 나.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것
- ⑤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할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인정에 관한 특정중요물자에 대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실시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또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에 통지한다.

(공급확보계획의 변경)

- 제10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이 장에 있어서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한 공급확보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는 전항 단서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공급확보계획의 인정의 취소)

- 제11조** ① 주무대신은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가 인정을 받은 공급확보계획(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이 장에 있어서 “인정 공급확보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주무대신은 인정 공급확보계획이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것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인정 공급확보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9조 제6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정기 보고)

- 제12조** 인정공급 확보 사업자는 매년도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공급확보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의 특례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

제13조 ① 주무대신은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이하 이 절 및 제98조에 있어서 “공고”라 한다)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 절 및 제48조 제5항에 있어서 “지정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의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의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이 절에 있어서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고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가 인정 공급 확보 사업(인정 공급확보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및 이것에 부대하는 업무(이하 이 절에 있어서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라고 한다)
2. 지정 금융기관이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에 대하여 인정 공급 확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중, 해당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여 공고로부터 대부를 받아 실시하는 것. 이하 이 장 및 제96조 제2호에 있어서 “공급 확보 촉진 업무”라고 한다)

②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및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가 인정 공급 확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관하여 공고 및 지정금융기관이 하여야 할 역할에 관한 사항
3. 공고가 실시하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 체제에 관한 사항
4. 지정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 체제에 관한 사항
5.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및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주무대신은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대신은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 2항의 규정은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공고가 실시하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제14조 공고는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2007년 법률 제57호) 제1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

제15조 ① 공고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의 실시 방법 및 실시 조건, 그 외의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방침(이하 이 절 및 제98조 제1호에 있어서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공급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③ 공고는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고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에 따라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금융기관 지정)

제16조 ① 주무대신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확보 촉진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신청에 의하여 공급 확보 촉진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은행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실시 체제 및 다음 항에 규정하는 공급 확보 촉진 업무 규정, 이 법령 및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 및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에 적합하고, 또한 공급 확보 촉진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에 충분한 자
3. 인적 구성에 비추어 공급 확보 촉진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절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 및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 방침에 근거하여 공급 확보 촉진 업무에 관한 규정(다음 항 및 제18조에 있어서 "공급 확보 촉진 업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이를 지정 신청서,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첨부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급 확보 촉진 업무 규정에는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실시 체제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은행법(1981 법률 제59호),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이들에 근거한 처분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 그 집행을 끝내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2.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 가. 심신의 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하지 못한 자
 - 나. 지정금융기관이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정 취소에 관련된 청문의 기일 및 장소의 공시의 날 전 60일 이내에 그 지정 금융기관의 임원이었던 자로 해당 지정의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지정 금융기관 지정의 공시 등)

- 제17조** ① 주무대신은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지정금융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공급 확보 촉진 업무를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한다.
- ② 지정금융기관은 그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공급 확보 촉진 업무를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한다.

(공급 확보 촉진 업무 규정의 변경 인가 등)

- 제18조** ① 지정금융기관은 공급 확보 촉진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주무대신은 지정 금융기관의 공급 확보 촉진 업무 규정이 공급 확보 촉진 업무가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공급 확보 촉진 업무 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협정)

- 제19조** ① 공고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업무를 한다.
1. 지정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공급 확보 촉진 업무에 관한 대출 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정금융기관은 그 재무상황 및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제출할 것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 지정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공급 확보 촉진 업무 및 공고가 실시하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의 내용 및 실시 방법 그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고는 전항의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장부의 기재)

제20조 지정금융기관은 공급 확보 촉진 업무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 명령)

제21조 주무대신은 이 절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급 확보 촉진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휴업 및 폐업)

- 제22조** ① 지정금융기관은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한다.
 - ③ 지정 금융기관이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전부를 폐업하였을 때는 해당 지정 금융 기관에 대한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지정 금융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3조** ① 주무대신은 지정금융기관이 제1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 ② 주무대신은 지정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급 확보 촉진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2. 지정에 관한 부정의 행위가 있었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주무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한다.

(지정 금융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업무의 종료)

제24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그 효력을 잃었을 때 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지정 금융기관이었던 자 또는 해당 지정 금융기관의 일반 승계인은 해당 지정 금융기관이 실시한 공급 확보 촉진 업무의 계약에 근거하는 거래를 종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으로 본다.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의 적용)

제25조 ①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고의 재무 및 회계 및 주무대신에 대하여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를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실시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2010 법률 제38호) 제6조가 규정하는 특정 사업 촉진 원활화 업무로 간주하여 동법 제17조(동조의 표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항, 제58조 및 제59조 제1항의 항, 제711조의 항, 제73조 제1호의 항, 제713조 제3호의 항, 제73조 제7호의 항 및 부칙 제47조 제1항의 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주식회사 일본 정책금융공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64조 제1항의 항중 “경제산업대신”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② 전항이 규정하는 것 외,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회사 일본 정책금융공고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동법의 규정 중 동표 중 동란에 열거하는 자구는 각각 동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자구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변경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할 업무	실시하는 업무(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3호)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이하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라고 한다)를 제외한다)
제58조 및 제59조 제1항	이 법	이 법률,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9조 제1항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제59조 제1항
제73조 제1호	이 법	이 법률(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 제3호	제11조	제11조 및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7호	제58조 제2항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제58조 제2항
부칙 제47조 제1항	공고 업무	공고의 업무(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 업무를 제외한다)

제4절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중소기업자 정의)

제26조 이 절에서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종업원의 수가 3백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의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는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2.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
3.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
4.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다음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
5.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그 업종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그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
6. 기업 조합
7. 협업 조합

- 8. 사업 협동 조합, 협동 조합 연합회, 그 외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9. 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종업원의 수가 3백명 이하의 자(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제27조 ①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는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1963년 법률 제111호) 제5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업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자가 인정 공급 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액이 3억 엔을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의 보유
 - 2. 중소기업자 중 자본금액이 3억 엔을 넘는 주식회사가 인정 공급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한 주식, 신주 예약권(그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신주예약권부사채 등 신주예약권의 행사로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
- ②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각각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제28조 ① 중소기업 신용보험법(1950 법률 제264호)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통 보험(제4항 및 제5항에 있어서 “보통 보험”이라고 한다), 동법 제3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제5항에 있어서 “무담보 보험”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3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특별 소액 보험 (제5항에 있어서 “특별 소액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관계로서, 공급 확보 관련 보증(동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3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으로서, 인정 공급 확보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와 관련된 것에 관한 다음 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동법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규정 중 동표의 중란에 열거하는 자구는 동표 하란에 열거하는 자구로 한다.

제3조 제1항	보험가액의 총액이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3호)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급 확보 관련 보증(이하 “공급 확보 관련 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 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각각
제3조의2 제1항 및 제3조의3 제1항	보험가액의 총액이	공급 확보 관련 보증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외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 제3항 및 제3조의3 제2항	해당 차입금의 금액 중	공급 확보 관련 보증 및 그 밖의 보증에 대하여 각각 해당 차입금의 금액 중
	해당 채무자	공급 확보 관련 보증 및 그 밖의 보증별로 해당 채무자

②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3조의 7 제1항에 규정하는 해외 투자 관계 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공급 확보 관련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한 것에 관한 동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 조 제1항 중 “2억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3억엔(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인정 공급 확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공급 확보 사업 자금”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금에 관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2억엔)으로, “4억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6억엔(공급 확보 사업 자금 이외의 자금에 관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4억엔)”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2억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3억엔(공급 확보 사업 자금 이외의 자금에 관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2억엔)”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3조의 8 제1항에 규정하는 신사업 개척 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공급 확보 관련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한 것에 관한 동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중 “2억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3억엔(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인정 공급 확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공급 확보 사업 자금”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금에 관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2억엔)으로, “4억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6억엔(공급 확보 사업 자금 이외의 자금에 관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4억엔)”으로, 동조 제2항중 “2억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3억엔(공급 확보 사업 자금 이외의 자금에 관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2억엔)”으로 한다.

④ 보통 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공급 확보 관련 보증에 관한 것에 대한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 “백분의 칠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동조 중 “백분의 칠십(무담보 보험, 특별 소액 보험, 유동자산담보 보험, 공해방지 보험, 에너지 대책 보험, 해외투자관계 보험, 신사업개척 보험, 사업재생 보험 및 특정 사채 보험은 백분의 팔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백분의 팔십”으로 한다.

⑤ 보통 보험, 무담보 보험 또는 특별 소액 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공급 확보 관련 보증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보험료의 액수는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보험 금액에 연백분의 2 이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절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련된 시장 환경의 정비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제29조 ① 주무대신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자의 신청에 관련된 공급확보계획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의 인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신청에 관련된 공급확보계획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주무대신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요구된 공급확보계획으로서 주무대신이 제9조 제1항의 인정을 한 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한 관세 정율법과의 관계)

제30조 ① 주무대신은 그 소관하는 산업 중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관세 정율법(1968년 법률 제54호)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교부를 받은 화물의 수입 사실 및 해당 수입이 일본의 산업(해당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화물과 동종의 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가 우려가 있고 일본 산업확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6항에 규정하는 조사에 관한 사무를 소장하는 대신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그 소관하는 산업 중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부당 염매(관세 정율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당 염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 화물의 수입 사실 및 해당 수입이 일본의 산업(부당 염매된 화물과 동종의 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혹은 줄 우려가 있어, 또는 일본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조사에 관한 사무를 소장하는 대신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그 소관하는 산업 중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하락, 그 외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화에 의한 특정 종류의 화물의 수입의 증가(본국의 국내총생산 양에 대한 비율의 증가를 포함한다)의 사실 및 해당 화물의 수입이 이와 동종의 물자 그 외 용도가 직접 경쟁하는 물자의 생산에 관한 일본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입힐 우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정율법 제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조사에 관한 사무를 소장하는 대신에게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해당 요구를 한 취지 및 그 요구에 관한 사실의 개요를 공표한다.

제6절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의한 지원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지정 및 업무)

제31조 ① 주무대신은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 및 안정공급확보 대책 방침에 근거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제3항에 규정하는 업무(이하 이 장 및 제96조 제3호에 있어서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신청에 의하여 특정중요물자마다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진 자
2. 안정공급확보지원 업무의 실시 체제가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자
3.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자
4. 전 3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절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공급확보사업자가 인정 공급 확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성금을 교부하는 것
2.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가 인정 공급 확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 기관(제33조 제2항 제4호에 있어서 “대부 금융 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자 보급금을 지급하는 것
3.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대상으로 하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실시하는 것
4.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대상으로 하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려는 자의 조회 및 상담에 응하는 것
5. 전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

④ 주무대신은 지정을 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이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실시할 때에 따라야 할 기준(이하 이 절에 있어서 “공급 확보지원 실시 기준”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주무대신은 공급확보지원실시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무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주무대신은 공급확보지원실시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전 2항의 규정은 공급 확보지원 실시 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지정의 공시 등)

- 제32조** ① 주무대신은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명칭, 주소 및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에 관한 특정중요물자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그 명칭, 주소 또는 안정공급확보지원업무를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규정)

- 제33조** ①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안정공급확보지원 업무를 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개시 전에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규정"이라고 한다)를 정하고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②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에 관한 특정중요물자
 2.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대상이 되는 인정 공급 확보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1조 제3항 제1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가.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에 대한 조성금의 교부의 요건에 관한 사항
 - 나.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에 의한 조성금의 교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다. 인정 공급 확보 사업자에 대한 조성금의 교부의 결정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
 - 라. 가에서 다까지 열거하는 것 외, 조성금의 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31조 제3항 제2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보급금의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 나. 대출금융기관에 의한 이자보급금의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다.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보급금의 지급의 결정에 붙여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
 - 라. 가에서 다까지 열거하는 것 외, 이자 보급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기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가의 신청이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 안정공급 확보 대책 방침 및 공급 확보지원 실시 기준에 적합함과 동시에 안정 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인가한다.
 -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할 때는 미리 재무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제1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주무대신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규정이 안정공급 확보 기본지침, 안정공급 확보 대책 방침 또는 공급 확보지원 실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

- 제34조** ①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주무대신이 공급 확보지원 실시 기준에 있어서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이 실시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한 기금(이하 이 절 및 제99조에 있어서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보조금으로 이것에 총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에 관련된 업무로서,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하여 긴요한 것
2. 복수 연도에 걸친 업무로서, 각 연도의 소요액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탄력적인 지출이 필요한 것,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해당 복수 연도에 걸친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대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에 총당하는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긴 이자 그 밖의 수입금은 당해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기금에 총당한다.
- ④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다음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채 그 밖의 주무대신이 정하는 유가증권 취득
 2. 은행 및 그 밖의 주무대신이 정한 금융 기관에 예금
 3.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신탁업무의 경영 등에 관한 법률(1943년 법률 제43호) 제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금전 신탁에서 원금보전 계약이 있는 것
 - ⑤ 주무대신은 전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⑥ 주무대신은 제10조 제3항 또는 제11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통지를 받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을 명한다.
 -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납부의 절차 및 그 귀속되는 회계 그 외 국고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⑧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을 마련하였을 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에 관한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주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 등)

- 제35조** ①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 연도,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②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한 사업 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분 경리)

- 제36조**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마다 경리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관한 경리에 대하여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다음 호에 열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2.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기금에 관한 업무
3. 그 밖의 업무

(비밀유지의무)

제37조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및 이들 직업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부의 기재)

제38조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 명령)

제39조 주무대신은 이 절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대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휴업 및 폐업)

- 제40조** ①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주무대신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전부의 폐업을 허가한 때에는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관한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한다.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지정 취소 등)

- 제41조** ① 주무대신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이 제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주무대신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2. 지정에 관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을 위반 한 때
- ③ 주무대신은 전 2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이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주무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한다.
- ⑤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그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전부를, 해당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전부를 승계하기 위하여 주무대신이 선정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 ⑥ 전항에 정하는 것의 외,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의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의 인계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성령으로 정한다.

제7절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지정 및 업무)

제42조 ① 별표에 열거하는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1항 제4호에 있어서 같다)은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지정을 받았을 때는 동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별법(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 “개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5조의 규정의 근거하여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지정과 관련된 안정공급 확보지원사업(제3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업무 및 이들에 부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안정공급 확보 대책 방침에 근거하여 그 소관하는 독립행정법인 중, 그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특정중요물자에 관련된 것을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32조의 규정은 안정공급 확보지원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에 설치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

제43조 ①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은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한 기금(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 있어서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이라고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1.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에 관련된 업무로서, 특정중요물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하여 긴요한 것
2. 복수 연도에 걸친 업무로서, 각 연도의 소요액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탄력적인 지출이 필요한 것, 그 외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해당 복수 연도에 걸친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34조 제3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이 마련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기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47조 및 제67조(제7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이 마련하는 안정공급 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제47조 제3호 중 “금전신탁”이란 것은 “금전신탁으로 원금보전의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

제8절 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등)

제44조 ① 주무대신은 그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특정중요물자에 대하여 제3절부터 전절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서는 해당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정공급 확보 기본방침 및 안정공급 확보 대책방침에 근거하여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 재무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는 해당 지정에 관한 특정중요물자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특정중요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에 대하여 비축 그 외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과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2012년 법률 제311호) 제10조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비축과는 상호 중복될 수 있다.

⑧ 주무대신은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특정중요물자(국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급증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당 특정중요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가격이 급등하기 전의 표준적인 가격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 대여 또는 사용시킬 수 있다.

⑨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 할 때는 사전에 내각 총리대신, 재무대신 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위탁관리자)

제45조 ① 주무대신은 전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48조 제7항에 있어서 “시설위탁관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령에는 시설위탁관리자의 지정의 절차, 관리의 위탁의 절차 그 외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시설위탁관리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관리의 업무(이하 이 조 및 제48조 제7항에 있어서 “시설위탁관리 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규정(제5항 및 제6항에 있어서 “시설위탁관리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④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 재무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설위탁관리 업무규정에는 시설위탁관리 업무의 실시의 방법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주무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시설위탁관리 업무 규정이 시설위탁관리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설위탁관리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설위탁관리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경리와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된 경리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⑨ 주무대신은 이 절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위탁관리자에게 시설위탁관리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주무대신은 시설위탁관리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그 외 해당 시설위탁관리자에 의한 관리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위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절 잡칙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제46조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외의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설명, 의견의 표명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금 확보)

제47조 국가는 인정(認定) 공급 확보사업자가 인정 공급 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한다.

(보고 징수 및 현장검사)

제48조 ①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물자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외의 단체에 대하여 당해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 수입, 판매, 조달 또는 보관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특정중요물자 등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외의 단체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에 의한 조사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 공급 확보사업자에게 인정 공급 확보계획의 실시상황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급확보 촉진업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지정 금융기관의 영업소 혹은 사무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공급 확보 촉진업무에 관해 질문하고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에 대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의 영업소 혹은 사무소 그 외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안정공급 확보지원 업무에 관해 질문하고,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시킬 수 있다.

⑦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시설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시설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그 직원에게, 시설위탁관리자의 영업소 혹은 사무소 그 외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시설위탁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시킬 수 있다.

⑧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

제49조 ① 정부는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특정방해행위(제52조 제2항 제2호 다에 규정하는 특정방해행위를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의 방지에 의한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이 조에 있어서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방해행위의 방지에 의한 특정 사회 기반 임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특정방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특정사회기반사업자(다음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사회기반사업자를 말한다. 다음호 및 제5호에 있어서 같다)의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해당 지정에 관하여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3.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한 권고 및 명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특정방해행위의 방지에 의한 특정 사회 기반 임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사항(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중요설비 및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정하는 주무성령의 입안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5. 특정방해행위의 방지에 의한 특정 사회 기반 임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관해 필요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 그 외의 관계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정방해행위의 방지에 의한 특정 사회 기반 임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내각총리대신은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안을 작성할 때는 미리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정책,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하여 지견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고 특정사회기반역무에 관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 3항의 규정은 특정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특정사회기반사업자의 지정)

제50조 ① 주무대신은 특정사회기반사업(다음에 열거하는 사업 중 특정 사회 기반 역무) 경우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 있어서 같다의 제공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6조 제2항에 있어서 동일 하다)를 실시하는 자 중, 그 사용하는 특정중요설비(특정사회기반사업 의 용도로 제공되는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 중, 특정사회기반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 하며, 또한 우리나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92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의 기능이 정지, 또는 저하한 경우에 그 제공하는 특정 사회 기반 임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지장 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전기사업
2. 가스사업법 제2조 제11항에 규정하는 가스 사업
3. 석유의 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석유 정제업 및 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석유 가스 수입업
4. 수도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수도 사업 및 동 조 제4항에 규정하는 수도용수 공급 사업
5. 철도사업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제1종 철도사업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7. 해상운송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화물 정기 항로 사업 및 동 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정기 항로 사업 중 주로 일본 항구와 일본 이외 지역의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

8. 항공법 제2조 제19항에 규정하는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및 동 조 제20항에 규정하는 국내 정기 항공 운송 사업
9. 공항(공항법 제2조에 규정하는 공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의 설치 및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및 공항에 관련된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공공 시설 등 운영 사업
10.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
11. 방송 사업 중, 방송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 방송을 실시하는 것
12. 우편 사업
13. 금융에 관련된 사업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 가. 은행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어느 행위를 실시하는 사업
 - 나. 보험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업
 - 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7항에 규정하는 거래소 금융상품시장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동조 제28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채무인수업 및 동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 라. 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탁업
 - 마.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자금 청산업 및 동법 제3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제3자형 선불식 지불 수단(동법 제4조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발행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
 - 바. 예금보험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 및 농수산업 협동조합 저금보험법 제3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 사. 사채, 주식 등의 이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체업
 - 아. 전자기록채권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채권기록업
14. 할부판매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포괄신용구입 알선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
 - ② 주무대신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지정을 받은 사람의 명칭 및 주소, 해당 지정에 관련된 특정사회기반사업의 종류 및 해당 지정을 한 날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 ③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 해제)

제51조 주무대신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등)

제52조 ①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하는 경우(특정사회기반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의 정령에 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하는 경우(특정중요설비에 당해 정령에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특정중요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특정중요설비의 유지관리 또는 조작(당해 특정중요설비의 기능을 조작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특정중요설비에 관련된 특정사회기반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특정중요설비가 일본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91조 제1항에 있어서 “중요유지관리 등”이라고 한다)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무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당해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또는 중용유지관 등의 위탁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장에

있어서 “도입 등 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정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특정중요설비의 중요유지관리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긴급하며 부득이한 경우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입등 계획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특정중요설비의 개요

2.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이 도입의 내용 및 시기

나. 특정중요설비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다. 특정중요설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정방해행위(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에 관하여 일본의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3. 특정중요설비의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의 내용 및 시기 또는 기간

나.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의 상대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의 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4. 전 3 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 등 계획서의 신고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주무대신이 해당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대신은 해당 도입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의 규모, 성질 등에 비추어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특정중요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 등 계획서의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우려가 큰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따른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하거나 중요유지관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간을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4월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여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장 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특정중요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주무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 때, 해당 신고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도입 등 계획서의 내용의 변경 그 외의 특정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관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하고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할 것 또는 이들을 중지하여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는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을 한 기간의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주무대신에게

해당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⑧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해당 권고에 따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해당 권고에 관한 변경을 더한 도입 등 계획서를 주무대신에 신고한 후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근거하여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여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시키거나 또는 해당 권고에 관한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 등 계획서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연장이 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경과 하지 아니하여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입 등 계획서에 기초하여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거나,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시킬 수 있다.

⑩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해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이며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주무대신은 해당 권고를 받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고에 관한 변경을 가한 도입 등 계획서를 주무대신에 신고한 후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근거하여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여,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할 것 또는 해당 권고에 관한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중지하여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변경을 가한 도입 등 계획서에 근거하여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하고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할 것 또는 해당 권고에 관한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중지하여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 등 계획서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는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⑪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시켰을 때는 지체 없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해당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신고서(제54조 제5항 및 제55조 제2항에 있어서 "긴급도입 등 신고서"라고 한다)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53조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간은, 해당 지정에 관련된 특정사회기반사업의 용도로 제공되는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및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제50조 제1항의 특정중요설비를 정하는 주무성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특정중요설비가 된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해당 설비, 기기, 장치 또는 프로그램이 특정중요설비가 된 날부터 6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중요유지관리 등을 정하는 주무성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중요유지관리 등이 된 유지관리 또는 조작에 대하여는 해당 유지관리 또는 조작이 중요유지관리 등으로 된 날부터 6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입 등 계획서의 변경 등)

제54조 ①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입 등 계획서(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하였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기 전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시키기 전 혹은 실시시키는 기간의 종료 전에 제52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입 등 계획서의 변경의 안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르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변경을 하는 것이 긴급하며 부득이한 경우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52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의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변경 내용을 기재한 도입 등 계획서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특정사회기반사업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하기 전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기 전 혹은 실시하게 하는 기간의 종료 이전에 동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및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 또는 해당 도입을 실시한 후에 동조 제2항 제2호 다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의 내용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 각항의 규정은,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긴급 도입 등 신고서(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하였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다음 조 제2항에 있어서 같다)에 관련된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도입을 하기 전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기 전 혹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및 전항 중 "도입을 하기 전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기 전 혹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중요유지관리 등을"로 한다.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등 후 등의 권고 및 명령)

- 제55조** ① 주무대신은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 등 계획서의 신고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가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할 수 있게 된 후 또는 실시한 후, 국제 정세의 변화 그 외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해당 도입 등 계획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신고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중요설비의 검사 또는 점검의 실시, 해당 특정중요설비의 중요유지관리등의 위탁의 상대방의 변경 그 외의 특정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주무대신은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도입 등 신고서의 신고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가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긴급 도입 등 신고서에 관련된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혹은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할 수 있게 된 후 또는 실시한 후, 해당 긴급 도입 등 신고서에 관한 특정중요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신고를 한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중요설비의 검사 또는 점검의 실시, 해당 특정중요설비의 중요유지관리 등의 위탁의 상대방의 변경 그 외의 특정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52조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권고 및 명령의 절차 등)

- 제56조** ① 주무대신은 제52조 제6항(제54조 제2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58조 제2항에 있어서 같다) 혹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제52조 제10항(제54조 제2항 및 전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8조에 있어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때는 미리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행정기관의 정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52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전조 및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52조 제4항(제5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연장, 제52조 제5항(제5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단축, 제52조 및 제6항 및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제5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절차 그 밖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주무대신의 책무)

제57조 주무대신은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게 특정방해행위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보고 징수 및 현장검사)

제58조 ① 주무대신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사회기반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특정사회기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제51조, 제52조 제6항 및 제10항 및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하여 그 실시하는 특정사회기반사업에 관한 필요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그 직원에게 특정사회기반사업자의 사무소 그 외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해당 특정사회기반사업에 관하여 질문 시키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제59조 주무대신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외의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설명, 의견의 표명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특정중요기술 개발 지원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제60조 ① 정부는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이 장에 있어서 "특정중요기술개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금의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제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연구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사항
6.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내각총리대신은 특정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할 때는 사전에 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 내외의 사회 경제 정세 및 연구개발의 동향 그 외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하여 지견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 3항의 규정은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국가의 시책)

제61조 국가는 특정중요기술(장래의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유지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첨단기술”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을 이용한 물자 혹은 역물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손상시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금의 확보, 인재의 육성 및 자질의 향상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

제62조 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자문에 의하여 행해지는 연구개발 등(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4항에 있어서 “연구개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해 자금을 교부하는 각 대신(이하 이 조 및 제 87조 제1항에 있어서 “연구개발대신”이라고 한다.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당 연구개발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람 및 해당 연구개발 대신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회(이하 이 조에 있어서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대신은 협의회를 조직 할 때는 미리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조직하는 연구개발 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회에, 국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을 말한다. 제6항에 있어서 같다) 그 외의 연구개발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동의를 얻어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해당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당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촉진을 위한 방책에 관한 사항
3. 해당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당해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해당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는 구성원은 전항의 협의의 결과에 근거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관리 그 외의 필요한 대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제4항의 협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구성원 또는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해당 협의회는 구성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대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설명, 의견의 표명 그 외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성원 및 해당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은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한다.

⑦ 협의회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 협의회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지정 기금)

제63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특정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활성화법 제2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기금 중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정기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미리 재무대신, 해당 지정기금에 관한 자금배분기관(활성화법 제2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자금배분기관을 말한다)를 소관하는 대신(제4항 및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지정기금소관대신”이라 한다)

그 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금에 총당하는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기금소관대신은 내각총리대신과 공동으로 해당 지정기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 기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중, 해당 연구개발 등을 대표하는 자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지정기금소관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다음 항에 있어서 "지정기금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⑤ 전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지정기금협의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으로 표기있는 것은 "다음 조 제4항"과 동조 제3항 중 "연구개발대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정기금소관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조사연구)

제64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특정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다음 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조사연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조사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사연구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법인에 한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에 관한 내외의 사회경제적세 및 연구개발 동향의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능력을 가진 자
2. 첨단기술에 관한 내외의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보관하는 능력을 갖춘 자
3. 내외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관 그 외의 내외의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능력을 가진 자
4.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은 자(다음 항에 있어서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의 임원 혹은 직원 또는 이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

제65조 ① 정부는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특허법(1959년 법률 제121호)의 출원 공개의 특례에 관한 조치, 동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이 장에 있어서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정보의 적정 관리 그 밖에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 있어서 "특허출원의 비공개"라고 한다)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이 조에 있어서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보전지정(제7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전지정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항 및 제617조에 있어서 같다)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 4. 전 3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③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의 안을 작성할 때는 사전에 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 산업 기술 그 외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해 지견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야 한다.
-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 3항의 규정은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내각총리대신에의 송부)

- 제66조** ① 특허청대신은 특허출원을 받은 경우에 그 명세서 등에 공개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의 분야로서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에 관한 1971년 3월 24일의 스트라스부르협정 제1조에 규정하는 국제특허분류를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여 세분화한 것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에 있어서 “특정기술분야”라고 한다)에 속하는 발명(그 발명이 특정기술분야 중 보전지정을 한 경우에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분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가 기재되어 있을 때는 해당 특허출원의 날로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그 발명에 관한 기술의 수준 혹은 특징 또는 그 공개의 상황에 비추어 보전심사(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심사를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것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
- ②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출원과 함께 그 명세서 등에 기재한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것으로서, 내각부령·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심사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을 때도, 전항과 동일하게 한다. 과거에 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전심사에 더불어 다음 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해당 통지에 관련된 발명을 명세서 등에 기재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 ③ 특허청대신은 제1항 본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한 때에는 그 송부를 한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이 다음 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특허출원인 경우에 있어서의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 “해당 특허출원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동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동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날(당해 특허출원이 동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구분의 2 이상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하는 구분에 관한 동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날에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로 한다.

특허법 제36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어 서면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번역문이 제출된 날(동조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해당 번역문이 현재 제출된 날)
특허법 제38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8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명세서 및 도면 및 앞의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가 제출된 날

특허법 제38조의 4 제4항 단서의 경우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동조 제2항의 보완을 한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8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명세서 등 보완서가 제출된 날
특허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새로운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분할일
특허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에 관한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일

- ⑤ 특허법 제18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특허청대신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출원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특허청대신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또는 해당 송부가 되지 않고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제71조 또는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까지는 특허법 제49조, 제51조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특허청대신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고 나서 제70조 제1항 또는 제7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기까지 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고 나서 제71조 또는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기까지의 특허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신고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 ⑨ 특허청대신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고 나서 제70조 제1항 또는 제7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기까지의 사이에 특허출원을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한다.
- ⑩ 특허청대신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허출원인으로부터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있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지 아니함을 판단한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⑪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동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발명을 명세서 등에 기재한 특허출원으로서 그 개정 시, 현재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보전심사)

-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 등에 공개함으로써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되고, 또한, 그 우려의 정도 및 보전지정을 한 경우에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발명에 관한 정보의 보전(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장에 있어서 "보전 심사"라고 한다)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출원인 그 밖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국가의 기관에 대하여 보전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것 수 있습니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국가의 기관 이외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설명 그 외 필요한 협력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이익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선정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 이외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설명 그 외 필요한 협력을 요구함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람(보조자의 사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및 그 보조자.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미리 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당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할지 여부의 판단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것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때"라고 한다.

⑧ 보전심사에 관여하는 국가의 기관의 직원 및 제5항(전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내용의 공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이 될 수 있는 발명의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지에 관한 발명에 관한 정보 관리 상황
2. 특허출원인 이외에 해당 통지에 관한 발명에 관한 정보의 취급을 인정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전 심사 중의 발명 공개의 금지)

제68조 특허출원인은 전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또는 제7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당해 전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철회하거나 특허출원이 각하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전 심사의 중단)

제69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출원인이 제67조 제10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11항의 ①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6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보전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심사를 중단할 때는 사전에 특허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변명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심사를 중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청대신에게 통지한다.

4. 특허청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특허출원을 각하한다.

(보전지정)

제70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심사의 결과, 제6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명세서 등에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우려의 정도 및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발명에 관한 정보의 보전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명을 보전대상발명으로 지정하여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대신에게 통지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장 및 제88조에 있어서 "보전지정"이라고 한다)을 할 때는 해당 보전지정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보전지정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의 기간(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정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 후의 기간.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가 만료되는 날까지 보전지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지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67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4항 중 "발명" 및 동조 제5항 중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과 동조 제8항 중 "규정에 의하여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하여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이라 하고, "해당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해당 보전대상발명"로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특허출원인(통지 후에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전이 있었을 때는 그 승계인. 이하 이 장에 있어서 "지정 특허출원인"이라고 한다) 및 특허청대신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보전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통지)

제71조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심사의 결과 보전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대신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의 취하 등의 제한)

제72조 ① 지정특허출원인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② 지정 특허출원인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기까지는 실용신안법(1959년 법률 제123호) 제10조 제1항 및 의장법(1959년 법률 제125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보전대상발명의 실시 제한)

제73조 ① 지정특허출원인 및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시된 자 그 외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로서 해당 보전대상발명에 대하여 보전지정이 되어 이를 아는 자는 해당 보전대상발명의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있어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정특허출원인이 당해 실시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정 특허출원인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실시의 내용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관련된 실시에 의하여 동항 본문에 규정하는 사람 이외의 자가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알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외 보전대상발명에 그러한 정보의 유출 방지의 관점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보전대상발명에 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6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4항 중 “발명” 및 동조 제5항 중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으로, 동조 제8항 중 “규정에 의하여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하여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으로, “해당 발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해당 보전대상발명”으로 한다.
- ⑥ 내각총리대신은 지정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붙은 조건에 위반하여 보전대상발명의 실시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각하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청대신 및 지정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지정특허출원인이 제7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특허출원인 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하여 보전대상발명을 실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⑦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는 사전에 지정 특허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변명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⑧ 특허청대신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다리고 특허출원을 각하하는 것으로 한다.

(보전대상발명의 공개 금지)

- 제74조** ① 지정특허출원인 및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시된 자 그 외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로서 해당 보전대상발명에 대하여 보전지정이 되어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지정특허출원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각하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청대신 및 지정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지정특허출원인이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특허출원인 이외의 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전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보전대상발명의 적정 관리 조치)

- 제75조** ① 지정특허출원인은 보전대상발명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그 밖의 보전대상발명에 관련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보전대상발명에 관한 정보의 취급을 인정한 사업자(이하 이 장에 있어서 “발명공유사업자”라고 한다)에게 그 조치를 강구 하도록하여야 한다.
- ② 발명공유사업자는 지정특허출원인의 지시에 따라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명공유사업자의 변경)

- 제76조** ① 지정특허출원인은 제67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동항에 규정하는 서류에 기재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새롭게 보전대상발명에 그러한 정보의 취급을 인정할 때에는 미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정특허출원인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공유사업자에게 보전대상발명에 관한 정보의 취급을 인정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그 외 발명공유사업자에 대하여 변경이 생겼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전지정의 해제 등)

제7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보전지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전지정을 해제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또는 보전지정의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지정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대신에게 통지한다.

③ 제67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4항 중 “발명” 및 동조 제5항 중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으로, 동조 제8항 중 “규정에 의하여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하여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으로, “해당 발명”은 “해당 보전대상발명”으로 한다.

(외국 출원 금지)

제78조 ① 일본 국내에서 한 발명이며, 공개되지 않은 것이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일 때에는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함으로써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답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발명을 기재한 외국 출원(외국 특허출원 및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 협력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을 말하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 및 제94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 명세서 등에 해당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로서 당해 특허출원의 날부터 10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 한 때(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및 해당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당해 특허출원이 각하되거나 당해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철회한 때를 제외한다.) 제66조 제1 항 본문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발행되지 아니한 때(당해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당해 특허출원이 각하 또는 당해 특허출원을 포기 혹은 취소한 때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10항,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의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특허출원인에 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은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발명(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보전대상발명)”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이 다음 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특허출원인 경우에 있어서의 동항 단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단서소항의 중, “해당 특허출원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동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날(당해 특허출원이 동표 상란에 열거하는 구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구분에 관한 동표 하란에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로 한다.

특허법 제36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어 서면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번역문이 제출된 날(동조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 그렇다면 동조 제7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해당 번역문이 현재 제출된 날)
특허법 제38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8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명세서 및 도면 및 앞의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가 제출된 날
특허법 제38조의4 제4항 단서의 경우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동조 제2항의 보완을 한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8조의4 제3항에 규정하는 명세서 등 보완서가 제출된 날
특허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에 관한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일

- ④ 특허청대신은 특허법 제1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 출원을 받은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 등에 제66조 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한다.
- ⑤ 내각총리대신은 특허청대신이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특허출원인(통지 후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전이 있을 때에는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국제출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출원이 각하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청대신 및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⑥ 제73조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⑦ 특허청대신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허출원을 각하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보전지정이 된 것인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다려 특허출원을 각하한다.

(외국 출원의 금지에 관한 사전 확인)

- 제79조** ①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할 수 있는 발명을 기재한 외국출원을 하려는 자는 일본에서 명세서 등에 해당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대신에 대하여 그 외국출원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② 특허청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 요구에 관련된 발명이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요구한 자에게 통지한다.
 - ③ 특허청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요구에 관한 발명이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공개함으로써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을 요구받은 내각총리대신은 지체 없이 특허청대신에게 회답한다.
 - ④ 특허청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답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요구에 관련된 발명이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 취지 및 해당 회답의 내용을 회답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건에 대하여 2만 5천 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는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⑦ 전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의 유무에 대하여는 산업경쟁력강화법(2011년 법률 제98호)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손실보상)

- 제80조** ① 국가는 보전대상발명(보전지정이 해제되거나 보전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인 것 그 밖에 보전지정을 받음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통상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해당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6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의 규정(보전지정의 기간 내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 외, 동항 후단 및 제8항의 규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4항

중 “발명” 및 동조 제5항 중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보전지정이 해제되거나 보전지정의 기간이 만료한 것을 포함한다)와 동조 제8항 중 “규정에 의하여 발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하여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대상발명(보전지정이 해제되거나 보전지정의 기간이 만료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당해 발명”은 “당해 보전대상발명”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를 피고로 한다.

(후원자의 통상 실시권)

제81조 ① 지정특허출원인으로서 보전지정이 된 다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가 된 날 전에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모르고 일본 국내에 있어서 당해 발명의 실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다른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권 또는 그 때 현재 존재하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다른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가지는 사람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허법 등의 특례)

제82조 ① 특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대신이 제69조 제4항, 제73조 제8항(제74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우선권의 주장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당해 우선권의 주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전지정이 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특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또는 앞의 출원에 대하여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3호)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중 늦은 때”로 한다.

③ 보전지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법 제48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그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 또는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3호)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을 경과한 날 중 늦은 날까지”라고 한다.

④ 보전지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기간 및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따른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3호)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특허청대신은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명세서,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보전대상발명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보전지정이 해제되거나, 또는 보전지정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및 개선 명령)

제83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지정특허출원인 또는 발명공유사업자가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전대상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에게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당해 당사자에게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명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특허출원인 또는 발명공유사업자가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보전대상발명의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당사자에게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명할 수 있다.

(보고 징수 및 현장검사)

제84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지정특허출원인 및 발명공유사업자에 대하여 보전대상발명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해당자의 사무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보전대상발명의 취급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송달)

제85조 ① 이 장에 규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송달하여야 할 서류는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② 특허법 제109조부터 제192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송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장 잡 칙

(주무대신 등)

제86조 ① 제2장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특정중요물자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대신으로 한다.

1. 제2장 제3절 및 제48조 제5항의 규정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
 2. 제30조 및 제48조 제2항의 규정 특정중요물자 등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3. 제2장 제6절(제34조 제6항을 제외한다) 및 제48조 제6항의 규정 내각총리대신 및 특정중요물자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4. 제2장 제7절의 규정 별표에 열거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소관하는 대신(특정중요물자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 한한다)
 5. 제46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 물자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 ② 제3장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특정사회기반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으로 한다.
- ③ 제2장 및 제3장에 있어서의 주무성령은 전 2항에 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87조 ① 이 법에 규정하는 주무대신, 연구개발대신 및 지정기금소관대신의 권한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지분부국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부국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금융청의 소장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금융청대신에게 위임한다.

③ 금융청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88조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보전지정, 제7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장, 제73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과조치)

제89조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국제 약속의 성실한 이행)

제90조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일본이 체결한 조약 그 밖의 국제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명령에 위임)

제91조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별 칙

제92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52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1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시켰을 때
2. 제52조 제3항(제54조 제2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2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는 기간(동조 제4항(제5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거나 502조 제3항 단서조항 또는 동조 제5항(이러한 규정을 제5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된 경우에는 당해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에 특정중요설비의 도입을 실시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시켰을 때
3. 제52조 제8항(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또는 중요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였을 때
4. 제52조 제10항(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제52조 제11항 또는 제54조 제3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때
6. 제73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붙은 조건에 위반하여 보전대상발명의 실시한 때
7. 거짓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았을 때
8.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전대상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때
 - ② 전항 제6호 및 제8호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 ③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이들 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93조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의 요구에 관련된 사무에 관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①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출원을 한 때(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전항의 죄는 일본 국외에 있어서 동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95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62조 제7항(제63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한 자
2. 제67조 제8항(제70조 제4항, 제73조 제5항, 제77조 제3항 및 제8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제9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전항 제2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 있어서 동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96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확보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3.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정공급확보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제48조 제4항 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5. 제4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 제2항 또는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혹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고, 혹은 허위의 대답을 하고, 혹은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 하였을 때
6.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7. 제54조 제4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97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

제1항 각호, 제94조 제1항 또는 전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도 각 이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고의 대표이사 또는 집행이사는 백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확보촉진 원활화 업무 실시방침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2.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때

제99조 제34조 제4항 또는 제43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기금 또는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기금을 운용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안정공급 확보지원법인 또는 안정공급 확보지원독립행정법인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이유

국제정세의 복잡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경제활동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함과 동시에 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및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에 관한 제도 및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이슈페이퍼 22-21-①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석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10-1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9-11-92325-10-1